

홍성은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검찰은 본인과 홍성은씨가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홍성은씨를 차버리기 위해 기설이한테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등 본인에게 참을 수 없는 인간적 모델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았습니다.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5사람의 필적을 같은 사람의 필적으로 감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일지는 나중에 3인의 사회적 부장들이 함께 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단 조사 이틀 후, 담당검사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혐노맹 의사록 중 일부의 글씨와 유서의 글씨가 같다고 하며 본인이 혐노맹 회의에 참가해서 발언하고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조사시 유서 또는 메모지 등등 유서필적과 같은 내용을 같은 필기구로 똑같이 작성하라는 것을 반노이로제 상태에서 거부했으나 검사가 자신과 같이 써보라고 강요하여 나중에 결국 쓰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같이 유서의 내용을 써서 유서와 대조를 해보았으나 오히려 검사의 필적이 유서의 필적과 흡사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본인이 엄청난 피해의식과 울지 못한 것 속에서 유서의 필적이 동료 누구의 글씨와 비슷하다고 진술한 것이 뼈아픈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후 그 동료는 형식적으로는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내용상으로는 유서대필 혐의로 조사를 위해 구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준식 인권위원장은 아무런 혐의도 없으면서 보복적 차원에서 구속을 당하셨습니다.

조사받는 중 우리나라 법원은 검찰의 말을 믿지, 피의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검사의 말에 나는 심한 허탈감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짐으로써 그동안에 피해 받은 많은 사람들, 특히 김기설 동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두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B-6

이번 재판은 검찰과 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한 심판의 계기가 될 것이다

- 강기훈씨 재판에 즈음하여 -

강기훈씨에 대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번 재판은 강기훈씨의 무죄를 밝히는 재판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부도덕함과 타락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될 것이다.

그간 검찰의 수사는 한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한 젊은이를 자살방조범으로 몰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억지수사였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18일간의 밀실강압수사를 통해서도 자살방조의 혐의는 물론 검찰이 주장하는 유서대필의 일시, 장소, 방법, 동기에 대해 납득할만한 어떠한 사실성명과 객관적 증거제시 없이 강기훈씨를 기소하였다. 검찰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는 아시아기독교협의회 회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필적감정에 의해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강기훈씨의 진실과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속속 제출되자 당황한 나머지 난데없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춰워 추가기소하였다. 강기훈씨를 비롯한 이 사건 관계자들의 검찰 출두 당시 유서대필 혐의 이외의 다른 혐의로 기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던 검찰이 이를 번복하여 추가기소한 것은 검찰의 파렴치한 본질을 보여주는 동시에 강기훈씨의 유서대필혐의가 행정권에 의하여 조작되었던 것이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강기훈씨는 애당초 검찰에 출두할 때 자신이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검찰의 조작음모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미 모든 사실은 강기훈씨가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밝힌 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거니와 이제 재판과정을 통해 그 진실들을 확인하고 엄연한 사실들을 날조조작하여 자신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정권의 추악함을 폭로단죄하는 길만이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재판에 즈음하여 이 사건 재판부가 어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기대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사법부가 얼마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과연 재판부가 용기를 갖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다. 그동안 수많은 시국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장이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판사의 판결문으로 옮겨져 씌어온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담당재판부에게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넘어서서 거대한 공권력을 등에 업은 거짓과 비양심이 법의 권위를 빌어 사회를 지배하려는 엄청난 음모에 사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환기해두고자 한다.

실제 이 사건에는 객관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많은 물증과 증인들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출두하여 증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검찰이 또다시 이들 증인들을 강제연행하여 별건구속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려는 무도한 시도를 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 또한 홍성은씨의 신변의 자유와 공개적인 증언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이 사건 재판부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정당한 변호권을 인정하며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회피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양심세력과 더불어 사법부의 재판과정을 부름뜬 눈으로 지켜볼 것이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현정권의 비열한 조작음모와 보당한 탄압에 맞서 오로지 진실을 무기로 양심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검찰의 조작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진실과 양심이 승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1991년 8월 2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강기훈후원회 준비위원회

□자료 나-1-3 (공판기록 132~135)

대 법 원

감민제 674호 755-7307 1991. 8. 30.
수 신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제 목 민원서 송부

법무부로부터 당처에 이첩된 별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명의의 민원은 귀원에 계류중인 (관련 사건 91 고합 1126)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송부합니다.

첨부: 민원서류 1부. 끝.

법 원 행정 처 감사 관

법 무 부

김 이 1254-12057 503-7053 1991. 8. 31.
수 신 법원행정처장
제 목 진정서 이송

별첨 남정규 등 명의의 진정서를 수리한 바, 본건은 귀처에서 처리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송합니다.

첨부: 진정서 1부. 끝.

법 무 부 장 관

문 화 부

종 2 35111-10803 720-3432 91. 8. 13
수 신 법무부장관
제 목 진정서 이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남정규)로부터 별첨과 같은 진정서가 제출되었는 바, 김기철 분신사건과 관련된 강기훈에 대한 사항으로서 귀부 소관으로 사료되어 이첩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진정서 1부. 끝.

문 화 부 장 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10-47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303호
TEL : 741-4350~1 FAX : 766-2427

예장총 제75-392호 1991. 7. 30.
수 신 문화부장관
제 목 김기철씨 분신사건의 강기훈씨에 대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현재 김기철씨의 분신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강기훈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1. 강기훈씨는 기독교인으로서 아버지 강태일씨와 어머니 권태평씨를 비롯한 온 가정이 본 총회 산하 서울노회 무학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본 총회의 교인입니다.

2. 본 총회와 온 교회는 강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지기를 주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작하시어 모든 재판과정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총 회 장 남 정 규
인권위원장 이 정 일

(공판기록 136)

* 변호사 이석태 등사청구서(사건기록 일체) <생략>

☐자료 나-1-4 (공판기록 137~146)

서울지방검찰청

198 김 수신 서울형사지방법원 발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신상규 제 목 추송서

1991. 9. 6

아래와 같이 추송합니다.

피고인 성명 강기훈 죄 명 자살방조 등 공소제기 1991. 7. 12 기록번호 1991. 형제46779호 91고합 1126호 25부

첨 부 진정서 2부.

대검찰청

강 력 23113-7510 (755-2880) 수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참 조 제 목 진정서 처리지시

1991. 6. 18.

최용목으로부터 제출된 별첨 진정서를 송부 하니 의법처리할 것.

첨 부 : 진정서 1통. 끝.

검찰총장 강력부장 전결

진정서 ① (공판기록 140)

검찰총장께

국가의 안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장께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서울 대교구 교구장이신 김수환추기경님의 지시에 의하여 본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현재 명동 대성당에 은신중인 강기훈씨 사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1일 20:00, 6월 12일 14:00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6월 12일 16:30에 강기훈씨와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를 합석시킨 가운데 그간의 경위와 입장을 들은 바, 강기훈씨는 공정한 수사만 보장된다면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성당을 떠나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진실을 밝힐 것을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를 추기경님께 보고를 드렸고, 추기경님의 지시에 의해 이 서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권인숙양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많은 시국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가 왜곡된 점이 없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과정을 보면 강기훈씨의 주장과 입증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로 일관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강기훈씨가 자진 출두하기에 앞서 유서대필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가 변호인이 참석한 자유스러운 분위기 하에서 강기훈씨의 주장과 입증이 모두 받아들여져 실제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검찰에 촉구하면서 이 공한을 드립니다.

1991년 6월 15일

천주교 서울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 용 목

진정서 ② (공판기록 141~146)

Handwritten document in Korean, likely a petition or statement, with a date stamp '1991. 6. 15' and a signature '최용목' at the bottom. The text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on lined paper.

자료 나-2-1 (공판기록 147~162)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 조서	
제 2 회			
사 건	91 고탕 1126 자살방조 91 고탕 1328(병합) 국가보안법 위반	기 일	1991. 9. 11. 10:00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장 소	제 호 법정
	판사 정 일 성	법정의 공개여부	공 개
	판사 이 영 대	고지된 다음 기일	1991. 9. 25. 14:00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출 석
피 고 인	강 기 훈		각 출 석
검 사	신상규, 안종택, 송명석 및 임 철		각 출 석
변호인 변호사	유현석, 김창국, 박연철 및 이석태		
재판장	전화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없다는 의견진술		
재판장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검사)		

변호인 김창국

피고인에게

문 :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두하던 날인 1991년 6월 24일 08:30분경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검찰에 출두하면 목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목비권 행사를 할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그간 검찰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 : 그날 09:20경 검찰청사에 도착하여 두시간쯤 구치감에 있다가 11층 1102호실로 불러 올라갔지요.

답 : 예.

문 : 1102호실은 11층의 복도 중간지점에 막아놓은 부분의 문을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조사실이고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서 위 문만 열어 잠그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지요.

답 : 예.

문 : 검찰의 조사를 받는 동안 삼청동 별관에 잠시 다녀온 외에는 계속 1102호실에서만 조사를 받았습니까.

답 : 예.

문 : 첫날 1102호실에 들어가 있으니 잠시 후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검사 5명이 들어오고 얼마 후 2명의 검사가 또 들어왔으며 3-4명의 수사관이 있었다는데 그렇습니까.

답 : 예.

문 : 그 방에 들어온 검사 한 분이 '너희들 전술이 목비권이냐, 누가 시켰느냐'고 물어 '검찰수사가 불공평하고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후 한시간 가량 묻는 말에 답변을 하지 않으니 '목비해도 좋다, 우리는 계속 언론에 때리겠다'고 하다가 검사 전원이 밖으로 나가고 수사관 3명이 남아서 약 2시간 가량 이것저것 묻고 입에 담기 거북한 욕설을 퍼붓고 하였는지요.

답 : 예.

문 : 얼마 후 주임검사가 들어오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자술서를 쓰면 모든 자료를 보여주겠다. 생각해보라'고 한 다음 밖으로 나가자 수사관이 종이와 펜을 내놓으며 '무조건 써라, 우리는 검사와 입장이 다르다, 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집을 주며 가족관계, 학력, 경력,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의 행적, 주변 인물과의 관계 등을 쓰라고 강요하여 겁도 나고 자술

서를 쓰지 않으면 유서의 필적과 관련하여 더욱 의심할 것 같아서 17매나 되는 용지에 자술서를 썼지요.

답 : 예.

문 : 자술서를 한장 쓸 때마다 수사관은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자술서를 다 쓰자 검사, 수사관 등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기록보따리 같은 것을 들고 들어오더라지요.

답 : 예.

문 : 그때가 몇시쯤 되었을 때입니까.

답 : 새벽이었습니다.

문 : 검사는 유서를 비롯하여 김기철의 이력서, 25) 주민등록본실신고서, 26) 편지, 27) 수첩, 28) 책표지 글씨, 29) 등과 피고인이 1985년에 쓴 진술서, 30) 항소이유서, What is Tow Tax³¹⁾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씨 등을 보여주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보고 나자 부장검사가 피고인 집에서 압수한 혁노맹관련 문건이라는 서류(중 9-1)³²⁾를 내보이며 '이거 네 글씨지'라고 물어서 아니라고 하니 '너 혁노맹에 관련된 것 다 알고 있다. 이것은 혁노맹사건 수사 당시 나오지 않은 문건이다. 이것 가지면 지금 혁노맹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 재조사하여 혼낼 수 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이 유서와 가장 유사한 필적이다'라고 하더라지요.

답 : 예.

문 : 또 혁노맹관련 문건이라는 재건대회 의사록(중 9-111 내지 116)³³⁾을 내보이며, '여기 중간중간에도 같은 글씨가 많다. 대검 문서감정실이 연륜은 짧지만 국과수보다 낫다. 우리는 이 의사록의 일부와 발신인이 김명훈으로 된 문건 및 유서를 동일인이 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결국 유서를 피고인이 쓰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였지요.

답 : 예.

문 : 왜 위 의사록의 일부만이 유서와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하였습니까.

답 : 의사록은 여러 사람이 쓴 것입니다.

문 : 위 문건들은 검찰이 언제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하였습니까.

25) 총자료집 I책 216쪽 참조.

답 : 5월 16일 낮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피고인은 검찰이 피고인을 유서대필 혐의자로 지목하고 있었으므로 조만간 피고인의 집을 수색할 것을 예상했을 텐데 왜 위 혁노맹관련 문건들을 집에 그대로 두었습니까.

답 : 피고인을 수사하리라고는 생각 못하였습니다.

문 : 약 3-4일간은 계속하여 위 혁노맹관련 문건을 가지고 검사, 수사관들이 번갈아가며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하였는데 그렇습니까.

답 : 예.

문 : 좀더 구체적으로 몇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검사는 '유서대필을 자백하면 혁노맹건 문제 삼지 않는다' 하고, 주임검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밝히지 않더라도 지금 공안부, 안기부, 기무사 등 입맛 다시는 곳이 많다. 우린 이것을 막으려고 한다. 사건 확대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며 어떤 수사관은 검사가 밖으로 나가자 '검사와 우리는 입장이 다르다. 우리가 자백하는 방법이 있다. 나도 이려고 싶지 않다. 자백하면 공안부분은 내가 건의해서라도 막아준다'라는 등으로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회유, 협박을 하더라지요.

답 : 예, 특히 참고인들을 모두 불러 수사하겠다는 말에 가장 타격을 받았습시다.

문 :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였나요.

답 : 이영미 등 학교후배들과 혁노맹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제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문 : 그와 같이 혁노맹건과 관련하여 회유, 협박을 받았을 때 피고인의 심경은 어떠하였습니까.

답 : 상당히 참담했고 사실은 아니지만 차라리 내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신체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막고 나중에 가서 법정에서 사실을 밝힐까,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모면해

26) 총자료집 I책 44쪽 참조.

27) 총자료집 I책 232쪽 참조.

28) 총자료집 I책 717쪽 참조.

29) 총자료집 I책 74쪽 참조.

30) 총자료집 I책 109쪽 참조.

31) 총자료집 I책 662쪽 참조.

32) 총자료집 I책 652쪽 참조.

33) 총자료집 I책 702쪽 참조.

보자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문 : 피고인은 혁노맹건과 관련된 회유, 협박에 건디기 어려워서 유서대필을 하였다고 허위자백이라도 할까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대필하였다고 할 것인지 그 스토리까지 구상을 하다가 그대로 믿어 줄런지도 의문이고 자술서에 피고인의 행적과도 잘 맞지 아니하여 위 혁노맹건의 발신자 김명훈의 본명을 가르쳐주고 말았지요

답 : 앞부분은 사실이나 김명훈의 본명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혁명의 불꽃 관계자들과 만나게 된 경위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문 : 그후 검찰은 전민련 수첩의 절취선과 필적감 정서를 보여주며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하여 절취선이 원본과 맞지 아니한 점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부장검사가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송의여전 학생들이 김기철의 필적이라 하여 가져온 메모와 무슨 노트를 책상에 내던지며 '봐라, 똑같이 않느냐' 라고 소리쳐서 그 노트를 보니까 임무영의 노트였고 육안으로 보기에 송의여전 메모의 글씨와 너무나 같아서 한동안은 임무영이 유서를 대필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였었지요

답 : 예.

문 : 그때부터 검찰은 임무영에게 유서대필의 혐의를 두고 상당기간 많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지요

답 : 예. 현상금을 걸고 잡으러 다닌 것으로 압니다.

문 : 임무영과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대질도 하였지요

답 : 예.

문 : 업무일지에 관하여도 검찰은 사후에 피고인이 조작하였다고 추궁하고 감정결과도 유서와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하였는데 후에 업무일지에는 세 사람의 글씨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에 대한 제5회 신문조서를 보면, "논리적으로 보아 유서가 대필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대필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왜 그런 진술을 하였습니까

답 : 수첩 절취선이 맞지 않아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시 생각으론 검찰 얘기대로 수첩의

절취선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사후에 조작된 것이고 그 필적이 유서대필과 같다는 국과수의 감정이 나온 이상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이라는 논리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전달해 주었다는 송의여전 메모가 임무영의 글씨와 똑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당시 그러한 판단에 의해 그러한 진술을 하였었습니다.

문 : 지금도 그와 같이 생각합니까

답 : 현재로선 유서가 대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문 : 피고인이 검찰에 출두한 6월 24일 이후 1102호실에서 밤을 세워 조사받은 것은 몇차례나 됩니까

답 : 이틀밤 2번, 하루밤 3번 정도 됩니다.

문 : 그러면 약 7일 동안은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고 검찰청에서 밤을 새운 것인가요

답 : 예.

문 : 조사실에서 밤샘조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보통 몇시부터 몇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까

답 : 아침 10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조사받았고

제일 일찍 끝날 때가 밤 9시경이었습니다.

문 : 구치소의 기상시간은 몇시입니까

답 : 오전 6시 30분입니다.

문 : 피고인에 대한 신문 : 및 조사는 검사 몇사람이 담당하였습니까

답 : 신문조서는 담당검사 1명이 했고 조사는 강력부 검사 전부가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수사관은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답 : 15-20명 정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즐지 않았습니까

답 : 매우 피곤했습니다.

문 : 피고인이 조사 도중 졸게 되면 잠시 눈이라도 붙이게 해 주던가요

답 : 구속기간 연장하기 전에는 세워놓고 조사하거나 머지않아 해 주었으며, 구속기간 연장 후에는 눈을 붙이게 해 주었습니다.

문 : 앞드려 뿔쳐 등을 시키지 않던가요

답 : 그렇진 않고 검사들이 엮고 수사관만 있을 때 앉았다 일어났다 등 가벼운 기압이 있었습니다.

문 : 밤샘조사를 하는 동안 검사나 수사관들도 계속 자지 않고 조사를 하였습니까

답 : 밤샘조사는 같이 밤샘한 적도 있으나, 대부분 2-3시간 단위로 교대로 하였습니다.

문 : 피고인이 검찰에 출두하여 기소될 때까지 19일 동안에 검사실에서 검사 입회하에 세번 변호인 접견을 한 것이 외부인 접촉의 전부이지요

답 : 예.

문 : 검찰에 출두한 후 가족이나 친지들을 처음 면회한 것은 언제입니까

답 : 예.

문 : 검찰에 출두한 후 가족이나 친지들을 처음 면회한 것은 언제입니까

답 : 예.

문 : 검찰에 출두한 후 가족이나 친지들을 처음 면회한 것은 언제입니까

답 : 기소 다음날인 7월 13일이었습니다.

검사 신상규

피고인에게

문 : 5월 8일 홍성으로부터 전민련 관계자에게 넘어간 수첩이 5월 20에 검찰에 제출됐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동안에 그 수첩을 보았나요

답 : 예.

문 : 수첩의 본체 부분과 분리돼서 끼워진 전화번호부 세장 절취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겹치기 때문에 그 수첩은 두개 이상의 수첩이 동원돼서 만들어진 조작된 수첩이라는 것을 피고인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지요

답 :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문 : 5월 20일 수첩을 제출한 때 전민련 상임집행위원 1명과 변호인 1명이 와서 수첩 전부의 복사를 요청해 검찰청 직원이 수첩을 2부 복사해 도장 찍고 간인해서 가져간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나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조사 첫날 부장검사 등 10여명이 조사실에 들어가 있었나요

답 : 예.

문 : 위 사람들이 모두 앉아 있었나요

답 : 다 앉지는 않고 6, 7명이 서 있었습니다.

문 : 그 방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있고 의자가 셋 있어서 피고인, 검사나 부장검사가 앉았나요

답 : 예.

문 : 교도관들은 방안에 있었나요

답 :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었습니다.

문 : 조사 첫날 인적사항 기재시 수사관들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나요

답 : 예.

답 :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으나, 그들의 눈초리나 표정, 말투 등에 겁이 났습니다.

문 : 5월 16일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 집을 수사할 때 89년 8월 14일부터 6박7일 동안 경기도 어느 곳에서 있었던 혁노맹 창건대회 의사록 6일분치가 피고인 집에서 발견되어 압수한 것이 맞나요

답 : 예.

문 : 검찰이 필적과 감정을 제시했을 때 85년도 피고인이 구속됐을 때 썼던 자술서, 진술서, 항소이유서 등은 피고인이 검찰에 오기 전에 이미 감정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서류들 중에도 화학 노트라든지 수강신청서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강기훈의 필적이라고 하는 것들만 감정이 되어 있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류들은 아직 감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 검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 :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답 : 사진을 찍어 똑같이 확대해 놓은 것은 300여 점 정도 보았으며, 그것이 유서필적과 같다면 빨리 자백하라고 검사님이 말하고 그에 관한 책자를 만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 : 피고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서류상의 필적에 대한 감정서를 본 적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서류 중 피고인의 것으로 짐작은 되나 이름이 써 있지 않다거나 하여 감정을 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것으로 시인한 것 몇가지가 있는데, 중9-16(What is chap two)를 감정을 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는데 기억하나요

답 : 예.

문 : 혁노맹 의사록, 중9-1 발신문을 본적이 있나요

답 : 예.

문 : 위 발신문을 누가 썼는지 불분명하여 김명훈이 강기훈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추궁하자 피고인은 "수신인으로 된 김정훈이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문 : 결국 위 발신자, 수신자를 밝혀려고 혁노맹 수사를 시작한 것인가요

답 : 예.

답: 예.

문: 임무영, 김진수, 임근제 등 검찰에서 5월부터 지금까지 찾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요.

답: 예.

문: 검찰수사시 "수첩이 조작되고 수첩의 글씨와 유서의 글씨가 같다면 논리적으로 유서는 대필된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였나요.

답: 예.

문: 기소될 때까지 밤샘조사를 연속한 것인가요.

답: 연속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문: 검찰조사시 담당검사 혼자 조사한 것이 아닌가요.

답: 잠깐 3-4시간 동안 자리에 없곤 하였으며, 주로 담당 검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재판장

변론 속행

1991. 9. 11.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자료 나-2-2 (공판기록 163~165)

91고합 1328호(합의 25부) 국가보안법위반 증거목록 검사 안종택

작성자	장 수	증 거 방 법		입증 취 지
		증 거 명 칭	성 명	
검 찰	752	피의자 신문조서 (제 1 회)	강 기 훈	공 소 사 실
	774	" (제 2 회)	"	"
	782	" (제 3 회)	"	"
	813	" (제 4 회)	"	"
		공판조서 등본	박 대 호	"
		"	노 성 철	"
		판결문 등본	박 대 호	"
		"	노 성 철	"
경 찰	232	피의자 신문조서 (제 1 회)	강 기 훈	공 소 사 실
	249	" (제 2 회)	"	"
	269	" (제 3 회)	"	"
	276	" (제 4 회)	"	"
	280	" (제 5 회)	"	"
	286	" (제 6 회)	"	"
	327	" (제 7 회)	"	"
	448	" (제 8 회)	"	"
	452	" (제 9 회)	"	"
	472	" (제 10 회)	"	"
	218	자 술 서	"	"
	222	"	"	"
	153	진 술 조 서	박 대 호	"
	???	"	노 성 철	"
???	"	이 종 원	"	
376	"	김 경 속	"	
???	진 술 서	이 종 원	"	
389	"	"	"	
174	"	김 경 속	"	
364	"	"	"	
487-557	감 정 서 (등본)			
	압 수 조 서		(자살방조사건 압수조서)	
	압수목록 9-1 내지 9-128		압수물(자살방조사건 압수물)	

91형제 46779호

증거 목록 제출(추가)

1991. 9. 1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1. 증거물

증제번호	물건	수량	압수목록정수	비고
4-90	노트	1	179	
4-91	결의문	1	179	
4-98	노트	1	179	
4-110	국민종합통장	1	179	
4-123	곤색추리닝 하의	1	179	

□자료 나-2-4 (공판기록 166~168)

검찰 제출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1. 증거물

증제번호	물건이름	동의여부	증제번호	물건이름	동의여부
1-6	유서	현품확인	9-10	사투의 의의	
1-7	신나통	후 결정	9-16	What is chap 2	
1-11	한겨레 신문 4판	(이하 같음)	9-18	수강노트	
1-12	가스라이터	그밖의	9-19	노트 (성수중학교 3년)	
1-13	마스크	증거물은	9-20	노트 (물리)	
1-17	일일찾집 티켓	모두 동의함	9-23	자주·민주·통일수첩	
2-1	주민등록본실신고서		9-24	일터에서 90	
3-1	책표지		9-25	전화수첩	
4-3	90년 민족민주운동의 평가		9-??	????	
4-90	노트		9-111	각 재건대회 의사록	
4-91	결의문		~116		
4-98	노트		9-117	생일축하카드	
4-110	국민종합통장		9-126	Two tac	
4-123	곤색추리닝 하의		9-127	신나통	
5-1	업무일지		9-128	디젤통	
7-1	조국은 하나 수첩		10-1	이력서	
7-2	메모지		11-1	수첩	
9-1	수신:김정훈 발신:김명훈		12-5	대학노트	
9-6	수강신청서		12-6	알림종이	
9-8	위험 (낙서)		13-1	연말카드	
9-9	수강노트 (화학과 3년)		13-2	편지	

2. 증거서류

- 가. 피의자 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 진술서·자술서 각 성립인정 - 단 임의성 부인
- 나. 참고인 진술조서 중 부동의하는 서류 윤여덕, 장병호, 이재구, 홍성은, 김정렬, 김정렬에 대한 각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 다. 진술서·자술서 중 부동의하는 서류 홍성은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윤석순 작성의 진술서
- 라. 기타 서류중 부동의하는 서류 이장홍 작성 범죄현장지문: 감정의뢰 회보 김형영 작성의 각 필적감정의뢰 회보 (352정, 409정, 536정, 585정, 734정)
- 마. 위 가, 나, 다, 라에 기재된 서류 외에는 모두 동의함.

돌아올 예정이니 그 이후에는 소환하면 틀림없이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소환된 김정렬씨는 저의 장인인테 연세가 많고 지리에 어두우니 다음번에 제가 모시고 같이 가겠습니다.

1991년 9월 20일

장병호

1991. 9. 11.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공판기록 169~173)
* 각 증인소환장 우편송달보고서 <생략>
증인 이재구(송달불능)
증인 장병호, 김정렬, 이재구 (송달)

(공판기록 174~176)
* 증거물 등사청구서 (박연철 변호사) <생략>

□자료 나-2-5 (공판기록 177)

수신: 서울형사지방법원

귀 법원 91고합 1126 자살방조사건의 증인으로 9월 25일 출석통지를 받았으나 9월 24일 독일 출장을 떠나가 되어 부득이 출석하지며 10월 6일에

■자료 나-3-1 (공판기록 179~183)

서울형사지방법원		
제 3 회		공 판 조 서
사 건	91 고탐 1126 자살방조 91 고탐 1328(병합) 국가보안법 위반	기 일 1991. 9. 25. 1400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장 소 제 호 법정
	판사 정 일 성	법정의 공개여부 공개
	판사 이 영 대	고지된 다음 기일 1991. 10. 1. 10:00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출 석
피 고 인	강 기 훈	각 출 석
검 사	신상규, 송명석 및 임 철	각 출 석
변호인 변호사	유현석, 이석태, 한기찬 및 조영환	각 불출석
증 인	장병호 및 김정열	출 석
"	이재구	
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없다는 의견진술	
재판장	출석한 증인 별지조서와 같이 신문	

재판장

피고인에게

문 : 피고인은 검찰의 마지막 진술에서 유서의 필체는 김기철의 글씨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다시 김기철의 글씨로 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진술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요

답 : 검찰에서는 객관적 자료의 미흡 등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문 :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변호인과 접견시 유서의 글씨가 피고인의 글씨체와 꼭 같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인가요

답 : 그렇게 진술한 것이 아니고 사진 찍은 것을 보니 비슷한 글씨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문 : 7월 5일자 자술서에 의하면 전민련이 검찰에 제출한 업무일지가 피고인이 처음 본 것과는 다르고 그 글씨가 김기철의 글씨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쓰여져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요

답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 위와 같이 자술서에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그 당시에는 유서대필자가 임무영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그와 같은 자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 : 5월 7일 저녁 늦게부터 김기철이 분신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전해들은 장준호 등 많은 사람들이 김기철을 만류하기 위해 찾아나선 것으로 되어 있고 홍성은은 그날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김기철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불러 주면서 김기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 달라고까지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전화를 받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홍성은이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 : 4월 27일 이후 김기철이 분신할 때까지 김기철을 만난 것이 5월 4일 저녁 한번뿐인가요

답 : 예

문 : 김형민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 점심도 같이 하였는데 어떤가요

답 : 기억에 없습니다.

문 : 김기철이 4월 27일 연세대 대책회의에 파견나간 후에도 수시로 전민련 사무실에 들러 자주 만난 것은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자는 검찰의 권유를 거절한 사실이 있나요

답 : 거절한 것이 아니고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문 : 5월 12일 장례식을 마치고 밤 10시경 종로 5가에 있는 도이취호프집에서 피고인과 이영미, 김진수, 홍성은이 생맥주를 마시면서 김진수가 자기가 박래전 사건이나 최덕수 분신사건을 직, 간접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번에 성은이를 내세운 것이 최대의 실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미 잊지려진 물이라고 말하였다고 홍성은이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말이 오간 일이 있는가요

답 : 기억에 없습니다.

문 : 그렇다면 홍성은이 없었던 말을 꾸며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답 : 홍성은이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 피고인은 분신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 어떠한 경우라도 분신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재판장

피고인 강기훈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

별 의견 없음

재판장

변론 속행(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촉구)

1991. 9. 25.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자료 나-3-2 (공판기록 184~204)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3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탐 1126 자살방조
91 고탐 1328(병합) 국가보안법 위반
증 인 이재구
생 년 월 일 1970. 7. 21.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군 인
주 거 서울기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제정하지 아니하였다.

검 사

증인에게

문 : 1991. 5. 8.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분신자
살한 김기설의 생모가 증인의 부친의 누님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친척 중 김기설과 친하게 지낸 편이고
김기설이 증인의 집에 자주 놀러온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1989년 초 김기설이 증인의 집에 놀러 왔을
때 이야기를 하던 중 김기설이 성남에 있는 출판사에
다닌다고 하여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김기설을 찾다가
없다고 하면 한정덕을 찾으라고 말한 적이 있어 김기
설이 한정덕이라는 가명을 쓴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답 : 예.

문 : 그 후 1989년 가을까지 김기설과 통화를 하여
김기설이 번호를 알려준 곳이 성남 민청련 사무실이

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이 1990. 5월경 머리를 다쳐 안
양중앙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 예.

문 : 당시 김기설은 술 먹고 어디에서 떨어져 다쳤
다고 고집하였으나 서울대학교 출신 운동권 학생들과
술을 먹었다고 말하고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 상처
로 보아 가족이나 증인 및 친지들은 그 사람들에게
맞아서 다친 것으로 생각하였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의 필적을 아는가요

답 : 예.

문 : 어떻게 김기설의 필적을 아는가요

답 : 평소 친하게 지내 낙서도 같이하고 증인이 김
기설의 글씨를 모방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서 필적을
알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이 필적이 누구의 필적으로 보이는가
요

이때 검사는 안양시 호계2동 사무소 행정주사 최병관
이 제출한 주민등록본상신고서(증제2-1호),³⁴⁾ 김기설
의 매부 장병호가 제출한 책표지 이면(증제3-1호),³⁵⁾
(주)다다 전무 박세용이 제출한 이력서(증제10-1호),³⁶⁾
김기설의 친구 안혜정이 제출한 연말카드 및 편지
(증제13-1, 2호)³⁷⁾를 각 별로 제시하다.

답 : 모두 김기설 본인의 필적으로 보입니다.

문 : 증인은 이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가요

이때 검사는 연세대 의료원 1층 회의실에서 김정열이
제출한 유서(증제1-6호)를 제시하다.

답 : 김기설의 필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 : 증인은 1991. 5. 13. 수도통합병원에서 진술조
서를 받았는데 모두 증인이 사실대로 임의 진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것인가요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30-239장³⁸⁾을 읽

34) 총자료집 I책 44쪽 참조.

35) 총자료집 I책 74쪽 참조.

36) 총자료집 I책 216쪽 참조.

37) 총자료집 I책 229쪽 참조.

38) 총자료집 I책 94쪽 참조.

어주다.

답 : 예. 사실대로 임의 진술하고 서명 날인하였습
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의 학력은 어떤가요

답 : 고졸입니다.

문 : 증인은 수사기록에서 김기설이 생전에 불러주
어 증인의 공책에 적혀 있는 '0342-42-5536' 전화번호
호는 나중에 성남 민청련 사무실 전화번호로 알게 되
었다(수사기록 233면)³⁹⁾고 진술하였는데, 성남 민청련
의 전화번호로 알게 된 경위가 어떤가요

답 : 본인이 직접 증인에게 적어 주었습니다.

문 : 언제 적어 주었나요

답 : 89년 초였습니다.

문 : 증인은 성남 민청련이라는 단체가 어떤 활동
을 하는 단체인지 아는가요

답 :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이 위 단체에서 어떤 일을 맡아
하였는지 아니요

답 : 책 교정 같은 일을 봐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지금까지 성남 민청련 단체에서 일하
는 사람들과 만나본 일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위 전화번호로 김기설과 통화한 일이
있나요

답 : 예.

문 : 몇번 통화했나요

답 : 2-3번 정도 했습니다.

문 : 증인이 통화할 당시 김기설 본명 대신 한정덕
을 찾아 통화하였나요

답 : 김기설로 할 때도 있었고 한정덕으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문 : 왜 가명을 사용하시는지 물어보지 않았나요

답 : 물어보지 않았습니니다.

문 : 대개 어떤 내용의 통화였나요

답 : 안부 정도 묻는 얘기였습니다.

39) 자료집 I책 230쪽 참조.

문 : 김기설이 증인보다 나이가 많은가요

답 : 5살 정도 위입니다.

문 : 증인에게 있어서 평소 김기설과 대화하면서
그의 조언이나 대화 내용이 증인에게 유익하였나요

답 : 예.

문 : 증인이 아는 김기설의 성품이 솔직한 편인가
요

답 : 예.

문 : 김기설의 성격이 급한 편인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김기설은 자기주관이 뚜렷한 편인가요

답 : 예. 그렇다고 너무 이기적이진 않았습니니다.

문 : 김기설과 같이 술 먹은 적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수사기록에서 1990. 5월경 김기설이 머
리를 다쳐서 안양중앙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
는데(수사기록 233면) 증인은 위 사실을 어떻게 아나
요

답 : 누님들한테서 들어서 알았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을 문병 간 일이 있나요

답 : 예.

문 : 언제 몇회나 갔나요

답 : 다치고 며칠 후인 90년 5월에 한번 오후에 가
서 저녁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의 병세가 어떻던가요

답 : 말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당시 김기설이 머리를 다치게 된 경위
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답 : 서울대생들과 술 먹고 민청련 사무실에 들어
와 창문을 열고 밀로 떨어졌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문 : 위 입원과 관련하여 증인은 수사기록에서 가
족들의 경우 '서울대학교 출신 운동권 학생들과 술을
함께 마셨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들과 말다툼
끝에 싸우다가 맞아서 다친 것이 아닌가 하고 식구들
이 추측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34
면)⁴⁰⁾ 증인은 위와 같이 가족들이 추측한 것을 가족
들로부터 들었나요

답 : 예.

40) 자료집 I책 230쪽 참조.

문 :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답 : 병원 가기 전에 누님들 중 어느 사람인가로부터 들었습니다.

문 : 증인이 들은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 주었나요

답 : 예.

문 : 더 이상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 메모를 본 일이 있나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수사기록 176면(41)의 메모 사본 2매를 제시하다.

답 : 예.

문 : 언제, 어디서 처음 보았나요

답 : 5월 13일 검찰 조사시 처음 보았습니다.

문 : 증인은 위 메모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아나요

답 : 김기설이 작성한 것으로 압니다.

문 : 어떻게 아나요

답 : 증인의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문 : 그때 검사가 증인에게 무어라고 하면서 위 메모를 보여 주었나요

답 : 김기설의 글씨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문 : 언제 작성했나요

답 : 잘 모릅니다.

문 : 작성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누님에게 책을 주면서 작성했다는 검사 얘기를 듣고 누님에게 확인하여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평소 김기설의 필적을 잘 알고 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필적에 관하여 그것이 김기설의 필적인지 아닌지 한눈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 :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문 : 증인은 이 건 유서사본 2매 본 일이 있나요

이때 변호인 증인에게 수사기록 18, 19면의 이 건 유서사본 2매를 제시하다.

답 : 검찰 조사시 처음 보았습니다.

문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유서상의 필적은 아무리 보아도 기설이형의 필적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진

술하였는데(수사기록 235면)42)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유서상의 필적은 처음 보는 낯선 필적이므로 그와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설이형의 필적을 세로로 내려 그을 때 시작 부분에 꺾어서 쓰는 습관이 있고 맛을 부리는 듯하게 흘림체를 잘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35면) 증인이 말하는 흘림체란 앞서 본 수사기록 176면 메모지 필적에서 보는 글씨체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답 : 또박또박 쓰면서 휘어지게 쓰는 글씨체입니다.

문 : 이 메모 중 어떤 것이 위 흘림체인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176면의 메모를 제시하다.

답 : '현모양처'의 현자 중 받침 'ㄴ'이나 '양'자 중 'ㄴ'와 같은 것들이 흘림체입니다.

문 : 증인이 김기설을 마지막으로 만난 때가 언제 인가요

답 : 병문안 갔을 때입니다.

문 : 그 후 서로 전화연락이나 편지를 주고받은 일은 없었나요

답 :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이 운동권에서 일해 왔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어떤 경위로 알았나요

답 : 그 전에 짐작하다가 성남 민청련 전화번호를 적어 줄 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문 : 증인이 위 사실을 알고 김기설과 운동권에 대하여 대화한 적이 있나요

답 : 그냥 알고만 있었고 운동권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 : 증인은 평소 운동권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나요

답 : 중간적 입장이었습니다.

문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저희 부모님도 기설이형과의 만남을 은근히 꺼려 하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36면)43)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집에서 김기설이 하는 일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42) 총자료집 I책 95쪽 참조.

43) 총자료집 I책 95쪽 참조.

41) 총자료집 I책 174쪽 참조.

문 : 이것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때 변호인 증인에게 수사기록 519면 내지 524면(44)의 봉투 겉면, 카드, 편지 등을 제시하다.

답 : 어제 검찰청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문 : 봉투 겉면과 그 안에 있는 글씨 모두가 김기설의 것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의 장례에 참석하였나요

답 : 참석 못했습니다.

문 : 장례 전에 연대 내의 영안실에는 가보았나요

답 :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문 : 못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장례일인 5월 12일 저녁에 소식을 들었으며 군인 신분이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의 장례 이후 묘지에 가본 일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 분신 후 김기설 가족 외에 전민련 관계자들을 만난 일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언론을 통해서 전민련측이 김기설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문건들을 본 일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검 사

증인에게

문 : 5월 13일 등촌동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진술조서 작성하였는데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답 : 위 병원 치과 군의관실입니다.

문 : 9월 중순경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거주지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어 반송하였다는 얘기를 들을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문 : 그때 부모님은 말렸으나 증인은 부모님의 의견과는 달리 유서의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인지 여부를 밝혀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답 : 예.

문 : 어제 수도통합병원에 검찰 직원이 찾아가 송달받았는지 확인한 바 있지요

답 : 예.

문 : 그때까지 증인은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책임자가 외출허가를 해 주었나요

답 : 외박 나왔습니다.

문 : 그래서 어제 오후에 검찰청에 와서 검사에게 부모도 반대하고 증인 자신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진술한 서류로 대신할 수 없느냐 하고 증언하기 싫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리고 증인의 신변보호 각서를 써 달라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취지였나요

답 : 전민련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 : 전민련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나 전화가 온 적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부모님이 걱정했나요

답 : 예.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김기설군이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까

답 : 수도공고를 다녔습니다.

문 : 광탄중합고등학교 1년 중퇴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수도공고에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당시 증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답 : 논현국민학교와 경서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문 : 김기설과 가까이 지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친척들 중에서 김기설과 가장 친하게 지낸 사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그렇습니까

답 : 예.

문 : 증인이 김기설을 마지막 본 것이 1990. 5월경 안양중앙병원에서이고 그후 서로 연락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습니까

답 : 예.

문 : 김기설은 다른 식구들은 물론 증인에게도 운

44) 총자료집 I책 249쪽 참조.

동권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데 그렇습니까.

답: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문: 어느 정도 얘기했나요

답: 일상 대화 중 조금 하였습니다.

문: 그런데 부모님이 걱정하였나요

답: 예.

문: 김기설과 같이 낙서하던 때는 언제인가요

답: 중인이 국민학교, 중학교 때와 김기설이 군에서 휴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의 수기를 요청한다는 의견진술.

검 사

증인의 필적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필적감정을 하던지 증인의 필적으로 된 서류들에 의함이 상당하고 자유스러운 증인에 방해가 되는 증인의 수기요청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진술.

재판장

변호인의 수기요청은 불허한다는 결정 고지.

변호인 한기찬

증인에게

문: 김기설의 글씨로 된 편지 등 문서를 소지하고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김기설이 증인에게 편지 등을 보낸 적이 있나요

답: 2-3번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필적에 대한 연구를 했거나 그에 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답: 없습니다.

문: 김기설의 글씨를 모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김기설이 증인에게 글씨를 모방하라고 써준 일이 있나요

답: 그런 일은 없으나, 같이 써 보곤 하였습니다.

문: 김기설의 글씨를 습득했나요

답: 습득하진 못했습니다.

문: 김기설의 글씨를 흉내는 내나요

답: 예.

문: 완전하게 글씨를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기설의 글씨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 경험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문: 증인의 경우 글씨체가 바뀐 경우가 몇번이나 되나요

답: 몇번인 줄은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의 경우 사정과 상황에 따라 글씨가 변화하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의 필적과 김기설의 필적이 다른가요

답: 예.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김기설과 같이 낙서하고 김기설의 글씨를 모방한 기간과 그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중인이 국민학교 5, 6학년 때 시작하여 중학교 때, 그리고 김기설이 군에서 휴가 나왔을 때 약 100회 가량 정도 됩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검사가 제시한 서류들 중 메모지 등의 필적은 김기설의 것이며, 유서는 김기설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증인의 경험상 그렇다는 취지인가요

답: 예.

1991. 9. 25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모두 동의

1. 압수물(압수목록 9-1 내지 9-128)46) 자살방조건의 변호인 의견과 같음.

1991. 9. 25.

위 피고인의 변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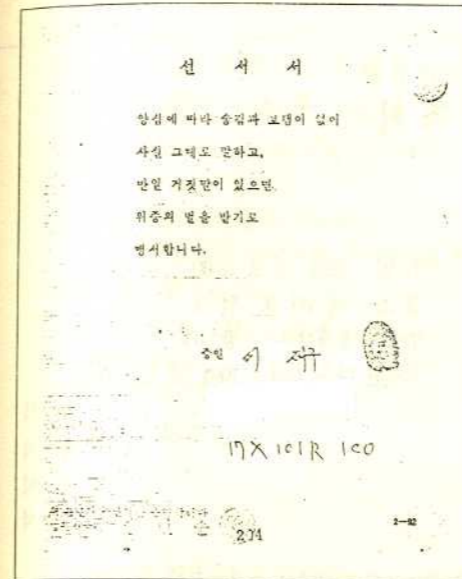
변호사 김 창 국

변호사 이 석 태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5부 귀 중

(공판기록 206~210)

* 장병호, 김형영, 김정렬 증인소환장 우편 송달보고서 <생략>



자료 나-3-3 (공판기록 205)

검찰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

사 인 91고합 1328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강 기 훈

자료 A-6 (동아, 9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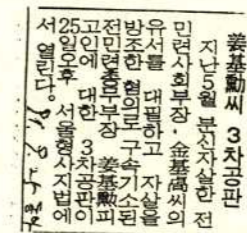
1.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1회 내지 4회)45) 각 성립 및 임의성 인정

1.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1회 내지 10회) 각 내용 부인

1. 피고인의 경찰 자술서 2개(수사기록 218장 및 222장) 각 내용 부인

1. 참고인 박대호에 대한 공판조서 등본 등 기타 증거 서류

45) 국가보안법 수사기록은 본 총자료집에서 제외하였음.



46) 총자료집 I 책 652쪽 이하 참조.

☐자료 나-4-1 (공판기록 211~212)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 조서

제 4 회

사 건 91 고합 1126 자살방조
91 고합 1328(병합)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장 판사 노 원 욱
판사 정 일 성
판사 이 영 대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피 고 인 강 기 훈
검 사 신상규 및 송명석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박연철 및 이석태
증 인 김정열, 장병호 및 김형영

기 일 1991. 10. 9. 10:00
장 소 제 417 호 법정
법정의 공개여부 공 개
고지된 다음 기일 1991. 10. 23. 10:00

출 석
각 출 석
각 출 석
각 출 석

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없다는 진술
재판장 출석한 증인들 별지와 같이 각 신문
재판장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재판장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 별 의견 없음
재판장 변론 속행(변호인들의 요청으로 김형영에 대한 반대신문을 차회에 계속할 것을 고지)

1991. 10. 9.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욱

☐자료 나-4-2 (공판기록 213~231)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4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합 1126 자살방조
91 고합 1328(병합) 국가보안법 위반

증 인 김 정 열
생 년 월 일 1935. 4. 18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공 원
주 거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 사
증인에게
문 : 증인은 5월 8일 오전 안양에 사는 큰사위 김중선의 연락을 받아 김기설의 사망소식을 알고서 연세대학교로 가게 되었나요
답 : 예.
문 : 그 곳에서 누가 증인에게 김기설의 사망경위를 설명하여 주고 또 유서를 보여 주었나요
답 : 누군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문 : 증인은 5월 8일 오후 아들이 사망하여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김기설의 분신자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부검을 원치 않고 속히 장례를 치르면 좋겠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하였지요
답 : 예.
문 : 5월 8일 밤 영안실에서 그곳에 있는 유서 사본을 천천히 읽어보고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고 의심하게 되었나요

답 : 예.
문 : 그날 밤 둘째딸 김학영, 셋째딸 김화영도 유서의 글씨가 김기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던가요
답 : 예.
문 : 유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큰누나에 대한 말이 전혀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의 생모는 언제 사망하였나요
답 : 김기설이 6세 때 사망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의 생모가 사망한 후 재혼하였나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계모에 대하여 정이 없어서 평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 하였나요
답 : 담담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어머니라고 부르긴 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의 생모가 일찍 사망한 후 계모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였고 또 증인이 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한 일이 있어서 김기설은 큰누나가 시집을 간 후에는 큰누나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군에 입대할 때까지 살고 있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만 써 있고 큰누나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인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이 죽기 직전인 91년 4월 중순경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면 증인과 누나들에게 결혼하겠다고 한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결혼하겠다는 말을 들은 둘째누나 김학영은 누나들 3명과 의논하여 방을 한칸 얻어주려고 한 일이 있었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0년 5월 성남에 있던 김기설이 머리를 다쳐 안양중앙병원에서 뇌수술을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그때 김기설은 성남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던 때인가요.

답 : 확실한 내용은 모르나, 자기말로 어떤 직장에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이 머리를 다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자기말로는 술 먹고 2층에서 떨어졌다고 하였는데, 증인 생각으로는 매를 맞아 다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김기설이 처음 머리를 다쳐 성남 양친회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문병을 온 친구들이 김기설에게 "맞았다는 말을 하였느냐? 절대로 절대로 맞았다고 하면 안된다"고 위협을 한 일이 있었는가요.

답 : 기설이 옆에 있던 환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환자 아버지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 김기설이 사망한 후 증인과 가족들은 즉시 화장을 하려고 하였는데 장례위원회인 전민련 간부들이 화장을 못하게 하고 가족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7 일장을 하자, 고 강경대와 같이 장례를 치루자고 하여 가족들과 다툰 일이 있었는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의 장례를 치를 때까지 증인이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식사할 때, 화장실에 갈 때 등 계속 하여 장례위 사람들이 증인을 따라다니며 감시를 한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장례 후 전민련에서 유서내용을 새긴 비석을 김기설의 묘소에 세워 놓았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이나 김기설의 누나, 자형들은 유서가 김기설이 쓴 것이 아니라며 비석을 뽑아버리라고 한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장례를 치른 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전민련의 사람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안양에 있는 김기설의 큰누나를 찾아와 "가만히 있으면 열사인데, 왜 글씨가 틀리다고 하여 개죽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며 귀찮게 한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문 : 또 김기설의 둘째누나 집에 전화를 하여 "우

리 전민련이 장례도 치루고 협조하여 주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여 곤경에 빠졌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문 : 이 건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 하였나요.

이때 검사는 수사기록 제1050-1059장(47)을 증인에게 제시하고 읽어준다.

답 : 예.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의 가족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증인에게는 처 이광옥, 장녀 김화자, 차녀 김화경, 3녀 김화용, 아들 김기설 이외에 다른 가족이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군을 낳은 생모는, 김기설군이 5-6세 때에 사망하고, 증인은 재혼을 하였는데, 언제 재혼을 하였습니까.

답 : 생모 사망한 해 9월에 재혼하였습니다.

문 : 혼인신고는 되어 있습니까.

답 : 예.

문 : 증인은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자녀를 더 두지 않았습니까.

답 : 예.

문 : 김기설군과 그 누님들은, 계모에 대하여,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까.

답 :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문 : 김기설군의 계모는, 김기설군이 5-6세부터, 중학교를 졸업하기까지 10년 이상을 슬하에 데리고 양육하였던 것은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이 지금까지 가졌은 직업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답 : 광탄에서 농사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문 : 증인은 현재 한성팻선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47) 총자료집 I 책 633쪽 참조.

답 : 단순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 : 급여는 얼마나 받았나요.

답 : 50만원 정도였습니다.

문 : 증인은, 1970년대 후반에 사우디아라비아국에 해외취업한 일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였던가요.

답 : 한국전업에 취업하여, 일반 기능공으로 약 1년 동안(79-80년)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이 사우디에 계실 때는 김기설군이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입니까.

답 : 예.

문 : 김기설군은,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고등학교 생활은 어떠한가요.

답 : 수도공고에 진학하였으며, 국비생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모릅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군이 수도공고를 졸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장에는 광탄중합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답 : 광탄중합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수도공고에 들어갔으나, 졸업은 못했습니다.

문 : 광탄중합고등학교는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 있는 학교입니까.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군의 큰누나 '김화자'가 '김기설군을 길러주고 학교도 보내주었다'고 하였는데, '김화자'의 주민등록번호는 '580318-2233416'이며, 현재 만 나이로 33세가 되지요.

답 : 예.

문 : '김화자'가 '김기설'을 길러주었다는 것은 김기설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주었다는 것인가요.

답 : 기설이가 누나네 집에 자주 가서 밥도 먹고 빨래도 해 주었습니다.

문 : '김화자'가 결혼한 해는 1980년이나 1981년경이지요.

답 : 연도는 잘 모르겠으나, 사우디에서 귀국한 다음 해였습니다.

문 : 김기설군은 아마도, 1981년 3월이나 1982년 3

월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12월 10일에는 입대하였는데, 그 사이에 김기설군은, 큰누나 집에서 기거하였습니까.

답 : 예.

문 : 김기설군이 광탄중합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수도공고에 국비생으로 다녔다면 큰누나가, 김기설군의 학비를 조달하여 줄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답 : 예.

문 : 김기설군은 입대하기 전까지는 대학에 가기 위하여, 검정고시와 입시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답 : 자기 말로는 학원에 계속 나가고 검정고시와 입시준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평소 김기설군의 글씨체를 알고 있었던가요.

답 : 확실한 것은 모르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김기설군이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가죽가방 가운데서 김기설군의 책과 노트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수사기록 1058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답 : 예, 기설이 죽기 전 14-15일 전에 와서 보고 그 전에도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간격으로 왔는데 항상 가죽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군의 둘째누나와 셋째누나는 모두 유서의 글씨가 김기설군의 글씨가 아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큰누나 김화자는 그 반대의견이었습니까.

답 : 큰누나는 당황해서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인 얘기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군은, 1988년 6월 23일 제대한 후에, 큰누나 김화자의 집에서 살았었나요.

답 : 예.

문 : 어느 정도 큰누나 집에 있었나요.

답 :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문 : 증인도 큰딸 김화자 집에서 같이 산 적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언제 얼마나 살았나요.

48) 총자료집 I 책 637쪽 참조.

답: 1년 정도 살았습니다.

문: 그래서 증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큰딸이 사는 안양집으로 되어 있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은 김기철군이, 제대한 후에,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지내왔는지 아세요.

답: 잘 모릅니다.

문: 김기철군은 증인에게 어느 출판사에서 일한다는 것의는 달리 자신의 하는 일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나요.

답: 예.

문: 김기철군은, "2-3개월에 한번 정도 증인을 찾아왔고, 최근에는 본인 사망하기 15일 전에 찾아왔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기철군이 증인을 찾아온 날짜는 1991년 4월 23경입니까.

답: 예.

문: 김기철군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원진레이온에 갔다 왔었다'는 말을 했다고 하였지요.

답: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문: 증인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원진레이온에 갔다 왔었다'는 말을 김기철이 했다고 진술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문: 김기철군은 평소 아버지인 증인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해를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었나요.

답: 증인이 궁금해서 자주 물어보았으나, 기철이는 잘 얘기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문: 증인은 김기철군의 노트를 읽어 보았다고 하였는데 그 노트에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확보하고,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써 있는 내용을 보았나요.

답: 예, 보았습니다.

문: 증인은, 김기철군이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것을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답: 예.

문: 증인은 5월 8일 아침, 아들이 분신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출근하였다가, 큰사위 김중선으로부터 연락

을 받고 알게 되었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이 1991년 5월 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 도착한 시간이 몇시였던가요.

답: 오전 11시경 정도로 생각합니다.

문: 1991년 5월 8일 세브란스병원 1층 회의실에서 경찰관에게 진술할 때에는 오후 2-3시경이라고 하고 (수사기록 65-66정) 1991년 8월 12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할 때에는 오전 10시가 좀 지난 시각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쪽이 옳은가요.

답: 세브란스에서 처음에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나 검찰에서의 진술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서 증인에게 '자신이 어제밤 증인의 집으로 전화한 사람'이라고 밝힌 여자를 기억하고 있나요.

답: 전화한 사람이라는 것은 못 듣고 기철이 여자 친구라고 소개받았습니다.

문: 5월 7일밤 부모님께 기철이의 안부를 대신 전한다는 전화를 받았나요.

답: 예.

문: 그 여자가 바로 '홍성은' 양인 것은 알았나요.

답: 몰랐습니다.

문: 증인은 세브란스 영안실에서 홍성은양에게 '네가 바로 그 처녀구나' 하고 말한 적이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

답: 그런 말을 한 것은 생각 안나고 "기철이를 왜 죽게 했나"고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문: 증인이 1991년 5월 7일 밤 늦게 '내일이 아버지 이날인데 김기철군이 집에도 가지 못한다 하면서 대신 전화해 달라고 하였다'는 어떤 여자의 전화를 받은 시간은 22:30(밤10:30) 이후 24:00(자정) 사이였는가요.

답: 예.

문: 그 여자가 그 전화상으로 이야기한 내용의 전부를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 내일이 아버지날인데 아버지를 못 찾아뵈니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그때 그 여자는 '김기철군이 내일 분신자살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그 여자는 김기철군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부모님께서 나서서 김기철군을 만나 달라는 취지의 말도 없었지요.

답: 예.

문: 또한 증인은 그 여자에게 '기철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으나, '자기도 모른다'고만 하였습니다.

답: 예.

문: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김기철군은 증인에 대하여 어떻게 해 주었었나요. 찾아 왔었나요, 선물을 사 가지고 왔었나요, 멀리 있을 때에는 전화나 편지를 하였었던가요.

답: 찾아와서 카네이션을 주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습니다.

문: 부모 모두를 위해 카네이션을 가져왔던 것이요.

답: 예.

문: 증인은 김기철군의 자취방에 한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김기철군이 4월 중순경에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누나들에게 의논하였다고 하였는데, 누나들 세 사람을 모두 찾아갔었나요.

답: 다 찾아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 누나들을 한데 모아 놓고 의논하였던가요.

답: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증인한테는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답: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문: 김기철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의 이름 등을 들은 적이 있나요.

답: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문: 증인은, 김기철군이 큰누나의 첫번째 조카가 태어난 기념으로, '육아법' 책을 사서 선물하였다고 들었지요.

답: 예.

문: 그 큰누나의 딸 혜정이는 1981년 7월 9일생이 맞지요.

답: 예.

문: 그렇다면, 김기철군이 위 책을 선물할 때는 16-17세 때이겠군요.

답: 예.

문: 증인은 5월 9일-5월 10일경 문상은 김기철군의 중학교 동창생 한명이 유서를 보고 기철이의 글씨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그 동창생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답: 그런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문: 인상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습니까.

답: 키가 크다는 것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문: 어떻게 그 사람이 김기철군의 중학교 동창생인 줄 알고 있습니까.

답: 중학교 다닐 적에 증인 집에 가끔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장병호씨를 아세요.

답: 예.

문: 장병호씨가 김기철이 누님에게 선물해 준 책 표지 이면을 검찰에 제출한 것을 알고 있나요.

답: 잘 모릅니다.

문: 위 책표지 이면의 원본을 본 일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위 책표지 이면 글씨를 김기철이 쓴 것을 알았나요.

답: 기철이 누나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 언제 썼는지 아세요.

답: 큰 외손녀 혜정이가 태어난 후인 것 같으나,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문: 기철군 장례비용을 가족측에서 부담한 일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누가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아세요.

답: 모릅니다.

문: 장례 등을 전민련 관계자들이 도와준 것을 아는가요

답: 참석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문: 가족들로부터 비석 등을 세울 때 전민련 관계자들이 도와주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답: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문: 비석을 본 일이 있나요

답: 예.

문: 비석의 글씨체는 유서글씨체와 같은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비석 내용이 유서 내용과 같은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비석이 지금 거기 그대로 있지요

답: 모르겠으나 있을 겁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유서가 김기설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답: 예.

문: 글씨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내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답: 글씨도 내용도 모두 김기설이 쓴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문: 제일 먼저 유서의 내용이나 글씨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셋째딸이 맨 먼저 기설이의 글씨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1991. 10. 9.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공판기록 232)

* 증인선서서 <생략>

자료 나-4-3 (공판기록 233~245)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4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합 1126 자살방조

91 고합 1328(병합) 국가보안법 위반

증 인 장 병 호

생 년 월 일 1942. 4. 16. 생

주민등록번호 4

직 업 기계제작업

주 거 서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 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1991년 5월 8일 서강대학교에서 사망한 김기설의 셋째 자형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은 김기설의 사망소식을 어떻게 알았고 언제 시신이 안치된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 가게 되었나요

답: 5월 8일 부산에서 저녁뉴스를 보고 죽었구나 생각하고 다음날인 5월 9일 오전 11시경에 세브란스 영안실에 갔습니다.

문: 증인은 5월 9일 저녁 검찰청에 전화하여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며 김기설의 사인에 대하여 의문점이 많으며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유서가 기설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무

엇인가요

답: 우선 필적이 맞지 않고, 큰누나가 키워 주었고 죽기 7개월 전에 큰누나 집에서 돈 270만원을 훔쳐갔는데 큰누나 얘기는 전혀 없었고, 전민련 서준식 얘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문: 증인은 91년 5월 10일 검찰청에 찾아와서 김기설의 필적을 제출하고 유서와 비교 감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일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때 제출한 필적이 이것인가요

이때 증제3-1호50)를 증인에게 제시

답: 예.

문: 위 필적은 김기설이 군대에 가면서 큰누나 김화자에게 조카 혜정이를 잘 키우라며 육아법에 관한 책을 선물하면서 그 책에 기재한 글씨인가요

답: 예.

문: 그후 김기설의 큰누나 김화자가 출산을 한 셋째누나 김화용에게 위 책을 건네주어 셋째누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은 김기설 사망 사건 전부터 김기설의 글씨를 잘 알고 있었는가요

답: 위 책의 글씨를 보았고 증인회사에 약 3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어 기설이의 글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1990년 5월경 김기설이 성남에서 머리를 다쳐 안양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예.

문: 그때 김기설이 머리를 다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기설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 증인은 김기설에게 동인을 때린 사람들을 고소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충고한 일이 있는가요

답: 예.

문: 고 김기설을 1990년 6월경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수술 후 통원치료를 하고 있던

50) 총자료집 I 책 94쪽 참조.

큰누나의 집에서 소리 없이 잠적하였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답: 잠적한 것은 알고 있으나 그 이유는 모릅니다.

문: 증인은 1991년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신촌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서 김기설 장례위원회 관계자들과 싸운 일이 있었는가요.

답: 예.

문: 몇차례나 누구와 왜 싸웠는가요.

답: 얼굴은 아나 이름은 모르는 준비위원이라는 사람과 싸웠는데 슬픔에 잠긴 기설이 아버지를 계속 쫓아다니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못하게 하여 화가 나 증인이 서너번 두 사람의 궁둥이를 발로 찬 적이 있습니다.

문: 증인은 유서를 김기설이 쓴 것이 아니므로 비석을 뽑아버리자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장례를 치른 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전민련의 사람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안양에 있는 김기설의 큰누나를 찾아와 "가만히 있으면 열사인데, 왜 글씨가 틀리다고 하여 개죽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며 귀찮게 한 일이 있는가요.

답: 기설이 큰누나가 증인의 처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을 증인의 처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문: 또 김기설의 둘째누나 집에 전화를 하여 "우리 전민련이 장례도 치루고 협조하여 주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여 곤경에 빠졌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는가요.

답: 그런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이 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나요.

답: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166-177장⁵¹⁾을 읽어준다.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습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증인의 현재 직업은 무엇인가요.

답: 환풍기 제작, 수출하고 기계수입 대행 등을 하

51) 총자료집 I 책 72쪽 참조.

고 있습니다.

문: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였나요.

답: 기계제작을 하였습니다.

문: 증인은 1985년경 김기설의 셋째누나 김화용과 혼인하였나요.

답: 예.

문: 당시 증인은 초혼이었나요.

답: 대답하기 싫습니다.

문: 증인은 위와 같이 김화용과 혼인하기 전의 김기설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은 모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미성년자 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나요.

답: 대답하기 싫습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과거 김기설의 행적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증인의 기억력은 좋은 편인가요.

답: 예.

문: 증인과 김기설의 누나들 및 그 남편들과의 사이는 서로 친하게 지내며 자주 왕래가 있는 편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은 김기설의 가족관계에 관하여 큰매형 김종서는 건재상회에서 일하고 둘째누나 김화영은 성수동에서 편직공장을 하는 김서방과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7면)⁵²⁾ 위 큰매형과 둘째누나 이름이 맞나요.

답: 이름까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문: 증인과 김기설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나요.

답: 만날 때마다 충고하고 야단만 쳤을 뿐이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문: 김기설이 증인의 집에 와 거주한 일이 있나요.

답: 하루 이틀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김기설을 만난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답: 20번 정도였습니다.

문: 평소 김기설이 증인에게 자신의 하는 일 등에 관하여 의논하거나 자세히 말해 준 바가 있나요.

답: 그런 적은 없으나, 증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52) 총자료집 I 책 72쪽 참조.

문: 증인이 알고 있는 김기설의 성격이 온순한 편이었나요.

답: 내성적입니다.

문: 김기설이 자기 주관이 뚜렷한 편이었나요.

답: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남의 말에 잘 따르는 편입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김기설이 "작년에는 성남에서 운동권 사람들과 같이 지냈었고 지금까지도 집에서 살지 않고 그런 계통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7면), 증인은 김기설이 "작년에 성남에서 운동권 사람들과 같이 지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답: 작년 성남의 양친회병원 응급실에 가서 김기설 친구들 3명을 보았고 그 전에 기설이의 이상한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문: 증인은 김기설이 '운동권 사람들'과 지내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아나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김기설이 분신 전까지 전국민족민중운동연합⁵³⁾(“전민련”)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명칭은 모르나 운동권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전민련이 어떤 단체인지 아나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김기설이 작년 5월경에 성남에서 머리 등을 다친 것과 관련하여 "상처부위가 한 군데가 아니고 얼굴, 윗머리, 뒷머리 등이 다친 것으로 보아 누구에게 맞은 것이 틀림없었고"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8면)⁵⁴⁾ 증인은 의학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요.

답: 군에서 의과보조(위생병)로 1년 반 근무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얼굴, 윗머리, 뒷머리 등의 부상 부위를 들어 "누구에게 맞은 것이 틀림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답: 증인의 경험에 비추어 단정할 수 있습니다.

문: 김기설이 머리에 붓대를 감았나요.

답: 예.

문: 위 붓대를 풀고 위와 같이 단정하였나요 아니면 붓대를 풀지 않고 그렇게 단정하였나요.

답: 붓대를 풀지 않고 만져보고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문: 증인은 위 부상 부위와 관련하여 당시 김기설의 담당의사에게 맞아서 다친 것인지 또는 어디에서 떨어져서 다친 것인지 확인한 바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당시 부상 경위에 대하여 김기설 본인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답: 기설이는 술 먹고 2층에서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문: 증인은 또 위 부상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김기설의 아버지에게 전해 준 말에 의하면 어느 날 밤 김기설의 친구 3명이 병실에 찾아와 절대로 맞았다는 말을 하면 안되고 맞았다는 말을 하면 죽인다고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같은 면), 증인은 위 내용을 어떻게 아나요.

답: 기설이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문: 증인은 위 내용을 김기설에게 확인하였나요.

답: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김기설이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치료 도중에 병원에서 도망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9면)⁵⁵⁾ 입원을 마치고 큰누나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 증인이 보기에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나간 것을 그렇게 진술한 것인가요.

답: 증인의 치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 증인의 치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증인은 원본 또는 사본으로 이 건 김기설 유서 2매를 본 일이 있나요.

답: 원본은 본 적이 없으나 사본은 보았습니다.

문: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처음 보았나요.

답: 5월 9일 11시경 병원 영안실에서 유서 복사본이 많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보았습니다.

54) 총자료집 I 책 72쪽 참조.

55) 총자료집 I 책 73쪽 참조.

53) '전국민족민중운동연합'의 오기.

문 : 증인이 처음 보았을 때 위 글이 김기설이 쓴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였나요

답 : 예.

압수물 책표지 2매 사본 제시

문 : 이 책표지 2매 원본은 증인이 가져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가요

답 : 예.

문 : 위 책표지 2매는 같은 책에서 뜯어낸 것이냐

답 : 같은 책에서 뜯어낸 것인지 다른 책에서 뜯어낸 것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누가 쓴, 어떤 제목의 책에서 뜯어낸 것인가요

답 :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증인은 위 책표지 2매를 누가, 언제, 어디서 뜯어냈는지 아나요

답 : 증인이 5월 9일 저녁에 집에서 뜯어서 5월 10일 오전에 검찰에 가져갔습니다.

문 : 증인은 조카딸 김혜정이 1981년생인 사실을 아나요

답 : 모릅니다.

문 : 책표지 2매에 김기설이 언제 글을 쓰여진 것으로 아나요

답 : 증인 처로부터 큰누나가 얘기 낳은 직후에 썼다고 들었습니다.

문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책표지 2매를 "네, 제가 기설의 큰누나로부터 받은 것인데 수사에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1면56)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언제, 어디서 위 책표지 2매를 김기설의 큰누나로부터 받았나요

답 : 증인의 처가 처형으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문 : 김기설이 증인 회사에 근무한 것이 언제인가요

답 : 제대 후인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문 : 그 회사 이름은 무엇인가요

답 : 모드 스트라이프였습니다.

문 : 김기설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답 : 원단 입·출고였습니다.

문 : 비석을 보았나요

답 : 예.

문 : 비석 내용이 유서 내용과 같은가요

답 :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문 : 비석이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답 : 예.

1991. 10. 9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공판기록 246)

* 증인선서서 <생략>

☐자료 나-4-4 (공판기록 247~304)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4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병합) 국가보안법 위반
증 인 김 형 영
생 년 월 일 1939. 11. 19.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공 무 원
주 거 서울 /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 사

증인에게

문 : 증인은 1977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서 감정요원으로 공채되어 1982년 5월 문서감정실장이 된 이래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의 책임자인 문서분석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서예의 역사와 인장의 역사, 기법에 관한 "인각교범"이라는 저서를 공동출간한 사실이 있고, 각종 부동산 사기사건, 어린이 유괴사건, 식품회사 관련 독극물 투입 협박사건 등의 문서 감정 책임자로서 이를 처리하였으며, 월간 "수사연구"에 문서감정사례를 격월간으로 연재하고 있고,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경찰대학 수사간부연구소, 경찰종합학교 등에서 문서감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전문지식으로 한글필적감정 방법과 기준을 정리하고 감

정서식을 만들고 이에 대한 강의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이 만든 감정 방법과 기준이 현재 국내에서 한글필적 감정에 대한 지침이 되고 있는가요

답 : 예.

문 :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에는 입체현미경, 수종의 실체현미경, 고정밀 확대투영기, 적외선현미경, 자외선감식기, 비교확대투영기, 필흔재생기 등 선진국에 손색이 없는 다수의 과학수사장비를 갖추고 문서, 필적감정업무를 실시하고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책임자로 있는 문서분석실에서는 1990년에는 3,600여건을 감정하였고, 증인이 1977년 문서 감정요원으로 임용된 후 처리한 감정건수는 직접, 간접으로 수만건에 달하지요

답 : 예.

문 : 문서분석실에서는 감정을 의뢰받아 회보할 경우 회신은 1인의 명의로 하나, 실은 1명이 감정한 결과를 문서분석실의 감정요원 4명이 함께 검토하고 1명이라도 대조자료 부족이라는 등 이의를 제기하면 감정불능 등으로 회보하는 것이 관례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소위 김기설 명의의 유서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의뢰를 받고 필적감정 및 수첩의 성상에 관한 감정등 문서 감정을 한 후 이를 회보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위 감정회보도 관례에 따라 문서분석실의 감정요원 4명이 함께 내린 결론을 회보한 것인가요

답 : 예.

문 : 따라서 김기설 명의의 유서 감정과 관련하여 전민련 측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한 것처럼 증인 혼자 감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지요

답 : 예, 전혀 다릅니다.

문 : 증인은 1991년 5월 15일경

· 김기설 명의의 유서와

· 김기설이 누나에게 선물한 육아책자속의 필적

· 김기설의 무인이 찍힌 주민등록분실 신고서
 ·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 김기설에게 증정된 책표지의 필적의 이동57)에 대하여 감정회보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문서분석실에서 감정회보를 하게 되면 감정회보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보를 하고 그 부분을 보관하지요

답 : 2부를 만들어 가지고 한부는 보내고 한부는 보관합니다.

문 : 그 부분을 가지고 왔는가요
 답 : 예, 가지고 왔습니다.
 문 : 그 회보서가 이것인가요

이때 검사는 수사기록 제354-제376정58)의 감정서를 제시하다

답 : 예.
 문 : 당시 유서와 업무일지는 동일한 필적이고 나머지는 유서와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당시 업무일지를 유서와 대조감정함에 있어 앞장의 한칸과 두번째 장의 5번째 칸 한줄(파란색 볼펜으로 쓰인 부분)에서는 유서와 동일한 필적상의 특징이 발견되지 않아 감정서에 대조자료로서 비교하지 않았는가요

답 : 예,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에게 의해 쓰였을지도 모르니 그 중 유서와 같은 필적만 감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전부 검토한 후 유서와 동일한 필적만 대상으로 감정하여 감정 회보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2차로 1991년 5월 17일경
 · 김기설 명의의 유서와
 · 수사기록에서 발췌한 강기훈의 진술서
 · 김기설의 친구 홍성은이 제출한 메모의 필적이동)에 관하여 감정회보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이것이 그 회보서인가요

이때 검사는 수사기록 제409정-제421정59)의 감정서를 제시하다

57) 異同.

답 : 예.
 문 : 당시 유서와 위 진술서, 메모의 필적은 동일한 필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당시 위 진술서는 서명이나 명의자가 없어 누구의 글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감정하였고, 그 결과 유서와 동일한 필적으로 결론이 났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3차로 1991년 5월 25일경

· 김기설 명의의 유서와
 · 김기설의 무인이 찍힌 주민등록분실 신고서
 · 김기설의 이력서
 · 김기설이 누나에게 선물한 책자속의 필적
 · 김기설이 친구 안혜정에 받았다는 편지봉투 및 내용

· 김기설의 친구 안혜정이 받았다는 카드 봉투 및 내용
 · 전민련에서 제출한 수첩의 필적 이동)에 대하여 감정회보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이것이 그 회보서인가요

이때 검사는 수사기록 제536정-제565정60)을 제시하다

답 : 예.
 문 : 당시 위 주민등록분실신고서, 이력서, 책자속의 필적, 편지봉투 및 내용, 카드봉투 및 내용은 상호 동일한 필적이거나 유서 및 수첩과는 상이한 필적이라고 결론이 났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1차 감정시 유서와 김기설이 누나에게 선물한 책자속의 필적, 주민등록분실신고서의 필적에 관하여 상호 이동을 판단할 수 없었으나, 3차 감정시에는 판정가능해진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 : 1차 감정 당시에는 정자로 썼을 때와 속필로 썼을 때의 변화 상태와 필기구에 따른 변화 상태가 다른 경우의 구별을 대조할 수 있는 문자수의 부족으로

58) 총자료집 I책 127쪽 참조.
 59) 총자료집 I책 165쪽 참조.
 60) 총자료집 I책 248쪽 참조.

로 힘들었으나, 3차 감정시에는 김기설의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봉투 및 내용, 카드봉투 내용 등이 더 있었으며, 특히 편지 내용은 3장이 되었고, 필기구도 다양하게 사용되어 김기설의 편지내용 중 김기설이 술을 마시고 기재하였다는 부분이 발견되는 등 자료가 충분해져서 김기설의 필적의 특징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 판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 : 또한 3차 감정시 위 필적의 이동)여부 뿐만 아니라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에서 찢어져 있는 전화번호 기입 부분 3매의 선과 위 수첩의 남아 있는 부분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도 감정회보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이것이 그 회보 내용인가요

이때 검사는 3차 감정시 중 수첩의 절취선에 관한 부분, 수사기록 제540정61) 및 제562정-565정62)을 다시 제시하다

답 : 예.
 문 : 당시 수첩의 전화번호 기입부 부분의 절취선이 수첩에 잔류된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전화번호 기입부부분 3매의 연필 기입 부분에 필압 흔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년 5월 29일 4차로
 · 김기설 명의의 유서와
 · 전민련에서 김기설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 김기설의 친구 홍성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메모
 · 강기훈의 단국대 재학 당시 노트
 · 강기훈 작성의 진술서
 · 강기훈이 1987년 4월 옥중에서 동생에게 보냈다는 편지상의 필적이동)에 관하여 감정회보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이것이 그 회보서인가요

이때, 검사는 수사기록 제585정-제590정63)의 감정서를 제시하다

답 : 예.
 문 : 당시 위 유서와 수첩, 메모, 강기훈의 노트, 진

61) 총자료집 I책 252쪽 참조.

술서의 필적은 동일한 필적이고 강기훈이 동생에게 보낸 편지는 유서 등과 이동)여부를 논단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당시 옥중편지는 사본으로 사본에서는 특징 현출상태가 약하여 미세한 특징을 비교검토하기 어려워 이동)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회보한 것인가요

답 : 예, 필적감정이라는 것은 개인이 기재할 때 우연히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특징, 필압 형태를 찾아서 감정해야 하는데 사본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 : 다른 건에서도 사본은 감정하지 않나요

답 : 예, 원본 감정을 원칙으로 하며, 대공문서, 불온문서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원본은 없고 사본만으로 수사에 필요한 경우 동일하다는 또는 상이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 의견만 제시할 때는 있습니다.

문 : 또한 4차 감정시 전민련에서 제출한 수첩의 절취선 불일치에 관하여도 추가 회보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이것이 그 회보 내용인가요

이때, 검사는 4차 감정시중 수첩의 절취선에 관한 부분, 수사기록 제589정 및 제590정64)을 다시 제시하다

답 : 예.
 문 : 당시 수첩 절취부분의 잔류 상태중 1매는 길게 잔류상태가 남아있고 2매는 상단에 부분적으로 돌출부분이 잔류하고 있어 이 돌출 부분이 겹치고, 절취선과 잔류상태부분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일치되는 부분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년 7월4일경 5차로

· 김기설 명의의 유서와
 · 전민련 제출 수첩
 · 강기훈의 수첩("일터에서 90")

62) 총자료집 I책 274쪽 참조.
 63) 총자료집 I책 312쪽 참조.
 64) 총자료집 I책 312쪽 참조.

- 강기훈의 노트(단국대 화학과 재학 당시)
- 강기훈의 자술서 및 진술서(1985년 11월 3일자)
- 강기훈 작성의 항소이유서
- 강기훈 작성 필적("Two Tac", "What is")

의 필적 이동에 관하여 감정보호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이것이 그 회보서인가요.

이때, 검사는 수사기록 제934정-제954정⁶⁵⁾의 감정서를 제시하다

답: 예.

문: 당시 유서와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위 강기훈의 수첩, 노트 등 모두 동일한 필적이라고 결론이 났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문: 이상 5차에 걸친 필적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유서와 전민련에서 제출한 수첩, 업무일지, 강기훈이 자신의 필적이라고 자백한 강기훈의 수첩, 강기훈의 노트, 강기훈의 자술서 및 진술서, 강기훈 작성의 항소이유서, 강기훈 작성의 필적("Two Tac", "What is")은 모두 동일한 필적이고, 유서와 김기설 명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이력서, 김기설이 누나에게 선물한 책자속의 필적, 김기설의 친구 안혜정이 제출한 편지 및 카드의 필적은 상호 상이한 필적이라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이러한 감정 결과는 단순히 글자를 확대 비교한 정도의 것이 아니고 현미경, 입체현미경, 비교확대기,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의 첨단 과학 수사장비를 활용하고 증인 등 문서 분석실의 문서 감정요원 4명이 오랜 한글 필적 감정의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전문지식을 활용, 전체적인 필의 구성과 배자의 형태, 필세, 필흔에 의한 운필순서, 조형미, 필의 방향각도, 간격, 운필상태를 검사하고 기필 부분과 종필 처리부분, 직선적이고 국선적인 필의 특성, 숙련과 미숙련의 차이, 자음과 모음의 특징, 개인의 잠재습성 등을 주시 검사하여 과학적으로 내린 결론인가요.

답: 예.

문: 그러면 증인 등이 이러한 감정 결과를 얻은

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검찰로부터 의뢰받아 1차로 육안 검사를 마치고 2차로 분류시험 검사를 거쳐서 위와 같은 감정방법에 나와 있는 형태, 특히 개인의 습성등을 감안, 모든 장비와 감정 방법을 동원해 얻은 결론을 검찰에 회보한 것입니다.

문: 증인이 감정한 내용에 대해서 감정보호서를 이용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답: 글씨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 개인 고유의 습성이 있는데 개인습성이 나타나 있는 부분만을 모아 확대 촬영하여 전체 특징을 모아 필적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김기설은 김기설 나름대로 개인적 습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문: 수첩의 절취선 불일치에 대하여도 육안으로도 확인되었지만 신중을 가하기 위하여 현미경, 입체현미경,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 적외선 현미경 및 필흔재생기 등으로 관찰시험한 결과인가요.

답: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고 현미경과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를 주로 이용하여 관찰시험하였습니다. 적외선 현미경등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수첩에 필압이 관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필흔재생기를 사용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문: 증인의 필적 감정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볼 때 현재 나타난 김기설 명의의 유서, 수첩등의 필적과 김기설의 쓴 편지, 주민등록분실신고서, 이력서등의 필적이 동일인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필체라고 생각되는가요.

답: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설의 일관성 있는 개인 특징이 주민등록분실신고서, 편지 등에서는 나타나, 유서에는 그런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설이 유서와 같은 필적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문: 증인은 과거 일본과학경찰연구소에서 문서감정 연수를 받고 그 후에도 위 연구소의 분석실장이던 요시다(吉田公一) 등 일본의 문서감정 전문가와 교류를 가져왔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오오니시 요시오(大西芳雄)이라는 사람을 아는가요.

답: 이번에 신문과 중간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문: 증인은 위 오오니시가 유서의 필체와 김기설의 필체가 같다는 감정결과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가요.

답: 예.

문: 위 오오니시가 어떤 사람인가요.

답: 박물관에서인가 고미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일반 문서 전문감정인은 아닌 것으로 요시다에게 들었습니다.

문: 오오니시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답: 신문에 보도된 오오니시의 감정은 증인도 지상을 통하여 보았습니다만 그에 의하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리울, 미움, 비움자를 비교하였는데 리울자에 관하여 강기훈의 동생에게 보낸 옥증편지에는 제2의 횡선이 있는 리울자(ㄱ, ㄲ)가 84개소인데 반해 유서에는 제2의 횡선이 없는 리울자(ㄱ)가 대부분이고, 미움자에 관하여는 강기훈의 편지에는 2획으로 쓴 미움자(ㄷ)와 3획으로 쓴 미움자(ㄷ) 중 3획으로 쓴 것이 많은데 반해 유서에는 반대로 2획으로 쓴 미움자가 많으며, 비움자에 관하여는 강기훈의 편지에는 "ㅅ"과 "ㅆ"이 혼용되고 있는데 반해 유서에는 "ㅅ"으로 거의 대부분 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감정한 강기훈의 85년도 진술서로 예로 들어 유서와 비교해보면 리울자에 관하여는 진술서 첫제장에서 정서로 쓴 경우 제2의 횡선이 있는 리울자(ㄱ)가 16개소이고 제 2의 횡선이 없는 리울자(ㄱ)가 5개소 였으나 둘째제장에서는 다소 속필체로 이행하면서 24개소에서 발견되는 리울자가 모두 제2의 횡선이 없는 "ㄱ"의 형태로 되어 속필체인 유서와 똑같은 형태인 제2의 횡선이 없는 리울자가 발견되는데, 이로 보아 오오니시는 리울자가 정서와 속필 형태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착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움자에 관하여는 진술서 첫째장 및 둘째장을 통틀어 "ㄷ", "ㄷ", "ㄷ"의 3가지 미움자가 병존하고 유서에도 "ㄷ", "ㄷ", "ㄷ" 3가지 형태가 병존하고 있어 오오니시가 김기설은 미움자로 주로 "ㄷ"의 형

태로 쓰는데 반해 강기훈은 주로 "ㄷ"자로 쓴다고 비교하여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미움자 형태가 한글 필적에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사성을 간과한 것으로 무의미한 것이고 특히 오오니시는 유서에는 받침에 쓴 "ㄷ"의 형태가 미움자임을 발견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움자에 관하여는 진술서 첫째장에서는 "ㅅ"이 9개소, "ㅆ"이 4개소 발견되는데 반해 다소 속필체로 이행하는 둘째제장에서는 16개소 모두 유서와 동일한 "ㅅ"자만이 발견되는데, 이 역시 오오니시가 정서와 속필 형태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기훈의 진술서에서는 처음에는 "ㄱ", "ㅅ"과 같은 정서로 쓰여 있으나 속필로 이행하면서는 유서와 같은 형태인 "ㄱ", "ㅅ"이 모두 발견되고 미움자 역시 강기훈의 진술서와 유서에는 정서와 속필의 상태에 따라 "ㄷ", "ㄷ", "ㄷ"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오니시는 한글을 모르고 한글 필적감정 경력이 축적된 바도 역시 없어 한글을 리울, 미움, 비움자가 정서체와 속필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판별할 능력도 없고 또한 리울, 미움, 비움자가 어떠한 형태로 어떤 빈도로 한글 필적에 나타나는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면 개인의 독특한 회소성이라고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판별, 감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모두 몽둥그려 통계적으로 현줄 숫자만을 단순히 비교한 것으로 전문감정인인 증인이 볼 때는 결국 정서와 속필에 따른 차이를 간과하고 대조자료 및 기준을 잘못 선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 증인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정을 하면서 문서감정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소신껏 감정한 것인가요.

답: 예.

변호사 이석태

증인에게

문: 증인의 학력이 어떤가요.

답: 고졸입니다.

문: 증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일하기 전까

65) 총자료집 I 책 519쪽 참조.

지의 경력은 어떤가요.

답 : 인쇄업, 인장업, 상패, 트로피 등을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해 왔나요.

답 : 계속해서 문서감정만 하였습니다.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그 연혁이 일제시대때 경찰형사과에 지문계를 설치했던 데에서 유래하고 1955년경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가 만들어져 현재까지 내무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답 : 예.

문 : 이전 필적감정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구는 서무과, 법의학 1과, 법의학 2과, 이화학 1과, 이화학 2과, 이화학 3과의 6개과와 그 아래 4개씩의 연구조사실 등이 있었나요.

답 : 얼마전까지 그랬으나, 얼마전의 기구개편으로 "2부 7과"가 되었습니다.

문 :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공채된 이래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화학 3과, 문서분석실에서 근무해 왔나요.

답 : 2년 3개월간(80년 2월부터 82년 5월)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구성원들은 일반직, 경찰직, 연구의뢰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답 : 고용직은 사무보조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다른 구성원은 맞습니다.

문 : 증인은 위 구성원 직책중 어디에 속하나요.

답 : 별정직입니다.

문 : 증인이 근무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답 : 필적, 인영, 위조, 변조, 말소, 인쇄물, 화폐 등 문서에 관계된 것은 모두 분석감정합니다.

문 : 위 문서분석실의 구성원은 몇명인가요.

답 : 감정하는 사람이 4명이며 2명의 보조원이 있습니다.

문 : 언제부터 실장으로 있었나요.

답 : 79년 5월부터 문서감정관이 된 이래 2년여를 제외한 기간 동안 계속 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을 제외하고 위 문서분석실 구성원중 박

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문서분석실의 구성원들은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요.

답 : 예.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필적감정을 하기 시작한 연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답 : 해방 후 바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은 주로 그 전문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배워 연마한 것인가요.

답 : 일본 것을 많이 참조하고 있고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축적해 온 결과를 이용합니다.

문 : 따라서 필적감정에 사용되는 용어 모두가 일본에서 사용되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지요.

답 : 대개는 같으나 조금씩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문 : 우리나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필적감정을 하는 외에 일반 개인들도 법원 등의 의뢰를 받아 필적감정을 하고 있지요.

답 : 예.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외에 필적감정을 하는 개인들의 숫자가 어느정도인가요.

답 : 부산에 1명, 대구에 1명, 서울에 7-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 : 개인으로 필적감정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필적감정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지요.

답 : 2명은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 : 증인이 처음 필적감정을 할 당시 필적감정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바가 없지요.

답 : 82년 10월경 일본에 가서 과학경찰연구소에서 두달동안 체계적으로 연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 : 그리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필적감정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바도 없지요.

답 : 예,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문 : 우리나라에는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서 필적감정에 관한 전문적인 학과 또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지요.

답 : 예, 제가 나가서 강사로서 강의를 가끔하는 외에는 없습니다.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필적감정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필적감정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시험제도 등도 없지요.

답 : 예.

문 : 일반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필적감정에 관한 학과 또는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하는 주된 이유는 필적감정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으로서 정립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주로 개인의 숙련된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에 감정요원이 수십명, 혹은 수백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 연구소 자체에서 증원을 1-2명 해달라고 하여도 못하는 형편인데 어느 부서에 가서 필요하지도 않은 학과나 강좌를 일반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개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문 : 개인의 숙련도와 능력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한 필적을 감정하는 때에도 경우에 따라 감정결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지요.

답 : 가끔 의견이 일치 안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문 : 그러므로 이건 필적감정의 결과도 1+1 = 2 또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는 것과 같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명백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고, 감정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이 사건 필적감정결과와 일치 않을 수도 있는가요.

답 : 어느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이거나 아니냐에 대하여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동일인의 필적이거나 판별불능이라는 의견대립은 가끔 있지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우리 연구소 감정요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지금까지 필적감정에 관한 논문을 쓰거나 언론에 발표한 일이 있나요.

답 : 월간 '수사연구'에 두달에 한번씩 감정사례를 연재중이고 그 연재중 약 2년전 처음 썼을 때 필적감정에 관한 이론을 쓴 일이 있습니다.

문 : 우리나라는 필적감정에 관한 전문문헌이나 학

술논문이 언론에 게재 또는 방송되거나 출판된 바가 없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에서 근무하던 때인 1980년 2월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감정에서 허위감정죄로 구속된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당시 동일한 감정사항에 관하여 사설감정원쪽과 증인이 소속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5대 1로 서로 다른 판정을 하여 큰 논란이 있었지요.

답 : 그것은 인영에 관한 것이었고, 3개의 인영에 관하여 사설감정인 3-4명이 인영사본을 감정하여 서로 다르다는 판정을 하였고, 증인은 인영 원본을 감정하여 인영들이 서로 동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문 : 당시 감정을 의뢰한 법원은 증인이 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사설감정인들이 한 감정결과를 채택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구속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증인의 감정결과가 잘못되었으나 허위감정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복직되었나요.

답 : 1심에서는 재감정 신청을 안받아주었고 2심에서 원본에 의하여 재감정하여 증인이 감정한 결과가 옳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복직되었습니다.

문 : 증인은 상당히 억울하게 구속된 것 같은데,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사설감정원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쪽의 의견이 대립되자 이후 말썽의 소지를 없앤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민사소송의 경우는 물론이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의 필적감정 의뢰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지요.

답 :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하지 않으나, 형사소송의 경우 하고 있습니다.

문 : 1년에 몇건이나 법원의 필적감정의뢰에 따라 감정하나요.

답 : 몇십건 정도 됩니다.

문 : 검찰이나 경찰에서 의뢰하는 경우에 국립과학

수사연구소가 필적감정을 실시하고 있지요

답: 예.

문: 필적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분석실이 전담하여 하나요

답: 예.

문: 검찰이나 경찰에서 필적감정을 의뢰할 경우 문서분석실의 업무배당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답: 증인이 사건수에 따라 배당합니다.

문: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서 의뢰한 것을 혼자 회보하나요

답: 의뢰건의 책임자가 분석한 결론에 대하여 4명 전원이 공동으로 심의하여 다른 의의가 없으면 그 결론을 회보하고 다른 의의가 있으면 재검토하여 그래도 의의가 있으면 판단불능으로 회보합니다. 그리고 회보 명의를 의뢰건의 책임자 명의로 합니다.

문: 이건 필적감정은 증인이 주로 하였나요

답: 예.

문: 대검찰청 또는 서울지방검찰청에도 필적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문서분석실이 있지요

답: 대검 과학수사운영과에 있습니다.

문: 위 문서분석실의 구성은 어떠한가요

답: 모릅니다

문: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대검 문서분석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보다 더 권위가 있지요

답: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이 역사가 길고 건수도 많아 오히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그래서 중요한 필적감정건의 경우 통상 대검 문서분석실에서 자체 감정을 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대외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공표하고 있지요

답: 그런 일은 전혀 모릅니다.

문: 이 사건의 경우에도 대검 문서분석실에서 관련 필적에 관하여 1차 감정을 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넘겨진 것이지요

답: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이 위 감정 전부를 혼자 하였다면 이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가요

답: 검찰에서 누가 감정해 달라고 지정해 주는 경

우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증인이 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하여 증인이 하였 습니다. 그리고 한 건의 감정책임자가 지정된 경우 관련된 감정은 그 감정 책임자가 계속하여 합니다.

문: 증인은 이건 필적감정을 하면서 감정 목적물인 필적서류들은 증인이 검찰청에 가서 직접 가지고 왔나요, 아니면 검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가져다 주었나요

답: 검찰에서 검사가 직접 가져 왔습니다.

문: 증인은 각각의 감정이 끝나면 바로 감정에 사용된 필적자료들을 검찰에 반환하였나요

답: 검사가 와서 가져 갔습니다.

문: 검사가 연구소에서 보관해 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답: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 증인은 이건 필적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지방검찰청 강력부에 간일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건 필적감정을 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나요, 아니면 내내 오직 이건 필적감정만 하였나요

답: 다른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통상 필적감정 1건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정도인가요

답: 처리 기한은 8일로 잡고 있고 빠르면 1, 2일 걸리고 늦으면 지연 통보를 하여 연장을 하는데, 대개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수사기록 506면⁶⁶⁾ 제시

문: 수사기록 506면은 서울지방검찰청 문서번호 강력 23110 - 012752로서 1991년 5월 21일자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1권, 수사기록에서 발췌한 강기훈 작성의 진술서 1부, 김기설 작성의 주민등록본실신고서 1매" 등 3가지 필적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요청한 것인데 증인은 이에 따라 위 필적들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서울지검에 보내 바 있나요

66) 총자료집 I 책 207쪽 참조.

답: 예, 의뢰가 온 내용은 모두 회보하였고 다만 이 건의 경우 중복된 내용이 있어 2-3가지를 한번에 모아 회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 그런데 위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또한 수사기록에 없고 이 사건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증인은 그 이유를 아나요

답: 기억은 못합니다만 찾아보겠습니다.

문: 증인은 5차에 걸쳐서 감정의뢰 회보를 하였고 회보에는 의뢰번호를 모두 기재하였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답: ……

재판장

증인에게

문: 잘모르겠어요

답: ……

검 사

증인에게

문: 변호인에게서 양해한다면 제가 증인에게 상기시 키겠습니다. 지금 변호인에게서 묻고 있는 것은 1991. 5. 21. 전민련측에서 김기설의 수첩이라고 제출한 것과 김기설의 주민등록본실신고서에 대한 감정의뢰 부분에 대한 회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일괄해서 회보할 생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접수는 안했던 것이지요

답: 예, 중복된 것이 많아서 그것을 생략하고 기록을 안한 것 같습니다.

문: 접수를 생략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답: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접수를 안하였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검찰에서 1991. 5. 21.에 최초로 김기설의 수첩을 감정의뢰하였고, 1991. 5. 25.자에도 김기설의 수첩과 주민등록증본실신고서, 카드, 편지 등을 감정의뢰 하였습니다. 이 수첩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회답이 없습니다. 다른 감정의뢰에 대하여

는 바로 하루 이틀만에 회보를 하였는데, 유독 수첩에 대하여는 회보를 하지 않다가, 1991. 5. 27. 제8차 감정의뢰를 한 이후 5. 29.에서야 수첩에 대한 감정결과를 회보하고, 이때에도 1991. 5. 21., 1991. 5. 25.자 감정의뢰번호가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이 서류에 보면 세가지 네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한 것입니다.

문: 증인이 가진 자료에 의하여 접수된 명확한 의뢰번호와 날짜는 어떤가요

답: 5월 21일 23110-012752, 의뢰번호의 앞머리는 똑같으니가 생략하겠습니다. 5월 23일자 013041, 5월 24일 013052, 5월 25일자 013245를 연속하여 가지고 왔길래 살펴보니 중복된 내용이고, 013052중 수첩 철 취부분에 대한 것은 달라 생각하고 같은 내용들은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접수된 의뢰번호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 같은 내용의 의뢰에 대하여 접수를 생략하였습니다.

문: 그와 같이 생략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인가요

답: 검찰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증인은 단지 1991. 5. 26.자 감정회보를 하면서 그 이전의 의뢰내용에 대하여 답을 다 하였으니까 검찰의뢰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내용이 포함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문: 검찰에서 1991. 5. 21. 수첩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다시 5. 23. 감정을 의뢰하면서 검사가 직접 또는 전화로 수첩에 대한 감정서를 빨리 만들어 보내라고 독촉하지 않았나요

답: 현미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그것이 잘

나오지 않아 늦어졌습니다. 돌출부분이 있으니 그것
이 무리가 되었는지 잘 나오지 않아 반복하여서 처리
하였습니다. 결과로 보아서 차이점이 많이 나는 부분
이었습니다.

문 : 차이점이 난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나요

답 : 절취선 부분이었습니다.

문 : 절취선 부분에 대하여는 1991. 5. 24 감정의뢰
하였고, 그 다음날로 회보를 보내지 않았던가요

답 : 예.

문 : 그런데 무슨 어려운 사진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랬습니다.

문 : 검찰에서는 1991. 5. 21 자 감정의뢰에 대한 회
보를 보낼 것을 독촉하지 않았나요

답 : 예, 독촉하였습니다. 제가 바쁜 사건으로 알고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몇가지 확인하겠는데, 1991. 5. 21. 의뢰받은
때에는 바쁜 것도 없고, 다음날 다시 의뢰가 들어올지
안올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21일 의뢰를 해 왔으면
그날 접수를 해 가지고 결과를 회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답 : 검찰에서 21일 가져오고 다음 다음날 또 가져
온다고 하여 그렇게 되면 일일이 새로 추가해서 감정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 : 21일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답 : 예.

문 : 그러면 바로 감정평가가 되었어야 할 것 아닙
니까.

답 : 예, 그런데 21일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 그럼 24일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 아니, 저희들이 일일이 메모를 해 놓았는데 같
은 사건이 추가로 왔을 때는 접수를 생략합니다.

문 : 21일에는 검사가 직접 의뢰하러 왔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평상시에는 그것을 수령하여 기재하고
서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 : 예.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5월 21일에 검찰에서 수첩, 진술서, 주민등록
본실신고서를 가져온 것은 틀림없지요

답 : 예.

문 : 바로 감정에 착수하였나요

답 : 예.

문 : 감정완료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수첩을 위 기간동안 계속 보관하였나요

답 :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서무계에서 감정의뢰한 문서내용을 모두 접수
목록에 기재 되었나요

답 : 의뢰한 문서를 일일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5월 25일에는 강기훈의 진술서에 대한 필적감
정이 없는데 어떤가요

답 : 5월 17일 2차 감정시 이미 필적감정을 하였습
니다.

문 : 5월 29일자 감정회보서를 보면 검찰의뢰 날짜
를 적고 있는데 5월 25일자에는 적지 않았나요

답 : 서무계에 접수한 것만 적었던 것입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이 작성한 이견 필적감정서들에 기재된
각개의 감정소견은 적어도 증인에게 있어서는 확정적
인 결론으로서 다시 똑같은 감정목적물에 대하여 감
정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감정소견을 얻을 것으로 보
나오

답 : 예.

문 : 필적감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선입견을 배제
하기 위하여 감정인은 감정의 대상이 되는 필적자료
에 관하여 감정에 앞서 의뢰자측으로부터 필적자료의

작성경위, 작성시기, 작성방법 등을 묻거나 듣지 않고
오직 제시된 필적자료의 내용과 형상에만 집중하여
감정하지요

답 : 예, 제시된 증거물을 가지고 합니다.

문 : 증인은 이견 필적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검찰
측으로부터 감정목적물인 필적자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입수경위 및 배경 등을 들은 바가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이견 각 필적감정서를 작성할 때까지
검찰측을 비롯한 누구의 조언이나 설명을 들은 바 없
이 오직 증인에게 제시된 필적자료만에 의하여 증인
의 경험과 양심에 따라 필적감정을 행하였나요

답 : 예.

문 : 일반적으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처음 글자를
배워 쓰기 시작한 국민학교 무렵부터 삼, 사십대의 성
인에 이르기까지 필체가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고 각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보통
이지요

답 : 예.

문 : 대개 한 개인에게 있어서 몇년간 광 간격으로
글씨체가 바뀌나요

답 : 직업, 생활환경도 사람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
습니다만 보통 어릴적에는 계속 바뀔 수 있으나, 20세
를 전후해 필적이 고정되며, 그 후의 변화는 개인차가
많습니다.

문 : 따라서 동일인이 쓴 글이라 해도 국민학교 때
와 30세 후를 예로 들면 작성시기에 따라 다른 필적
으로 볼 수도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견 필적감정 등을 행함에 있어서 각
필적자료의 정확한 작성시기를 모르는 채 감정하였나
요

답 : 이전에 의뢰받은 문서 중 이력서, 진술서 등은
작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이에 따라
감정하였습니다.

문 : 만일 이견 각 필적자료의 작성시기가 15세 이
전과 20대 후반과 같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러
한 작성시기를 고려하여 감정소견이 달라질 수도 있
겠지요

답 : 10년, 20년 같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문 : 또 한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쓴 것이라 해도
속필체, 정서체, 행서체, 종서체, 초서체 등으로 필체
를 달리 하는 경우 동일인의 필적인지 판별하기 어려
운 때가 있지요

답 : 예.

문 : 일반적으로 필적감정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는 필체를 몇가지로 나누나요

답 : 한글의 경우 한자와 달리 해서, 행서, 초서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정서체와 속필체, 안정된 상태에
서 기재된 것과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재된 것, 모방된
필적, 은폐된 필적 등등이 있습니다.

압수물 1-6, 유서기재 사본 제시

문 : 이 유서 2매의 필체는 속필체인가요

답 : 예.

압수물 2-1, 주민등록본실신고서(7) 사본 제시

문 : 이 주민등록본실 신고서의 필체는 정서체인가
요

답 : 예, 상당히 정서체로 보았습니다.

압수물 3-1, 책표지 2매(88) 사본 제시

문 : 이 책표지 2매의 필체는 무슨 체인가요

답 : 정서체입니다.

압수물 5-1, 업무일지 3매(89) 사본 제시

문 : 이 업무일지 3매의 필체는 무슨 체인가요

답 : 속필체입니다.

압수물 7-2, 메모지(70) 제시

문 : 이 메모지의 필체는 무슨 체인가요

답 : 정서도 속필도 아닌 중간체입니다.

압수물 9-9, 수강노트(71) 제시

문 : 이 수강노트의 필체는 무슨 체인가요

답 : 속필부분도 있고 정서체 부분도 있습니다.

압수물 9-126, Two Tac(72) 제시

문 : 이 Two Tac의 필체는 무슨 체인가요

67) 총자료집 I책 44쪽 참조.

68) 총자료집 I책 74쪽 참조.

69) 총자료집 I책 81쪽 참조.

70) 총자료집 I책 105쪽 참조.

71) 총자료집 I책 655쪽 참조.

72) 총자료집 I책 711쪽 참조.

답 : 작고 꼼꼼하게 기재된 것이라 구별이 쉽습니다.

문 : 증인은 전민련이 김기철의 것이라고 하며 제출한 '조국은 하나' 수첩을 필적감정한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위 수첩에 기재된 필체는 무슨 체인가요

답 : 주로 정서체로 기재됐는데 속필과 정서체의 혼합입니다.

입수물 13-1, 연말카드⁷³⁾ 제시

문 : 이 연말카드의 필체는 무슨 체인가요

답 : 붓펜으로 쓴 것인데, 쓰기는 정서체로 썼으나, 필획이 연결되어 있어 정서와 속필의 중간입니다.

입수물 13-2, 편지⁷⁴⁾ 제시

문 : 이 편지의 필체는 무슨 체인가요

답 : 내용이 처음에는 정서체이며 나중에는 다소 속필입니다.

수사기록 271면 내지 274면⁷⁵⁾ 제시

문 : 증인은 이 진술서의 필적을 감정한 일이 있나

답 : 예.

문 : 이 진술서의 필체는 무슨 체인가요

답 : 처음에는 정서체이며 차츰 속필로 되어 있습니다.

문 : 한편 동일인의 필적이 변화한다 해도 어느 시기가 되면 필적에 있어서 고정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또 이러한 특징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함을 갖게 되므로 필적과 관련된 현상을 '항상성과 회소성'의 원칙이라 하는 바, 필적감정이 가능한 바탕도 바로 이 '항상성'과 '회소성' 때문이지요.

답 : 개인적 특성에 주안을 두어 회소성이라 하여 이에 맞추어 필적을 감정한 것이며, 항상성이란 용어는 일본에서는 사용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문 : 그런데 동일인이 비슷한 시기에 쓴 글이라 해도 모든 필법의 특징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100퍼센트 동일하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고 감정 목적물의 모든 글자와 글자 또는 자음과 모음을 낱말이 비교하여 각 글자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양자에

73) 총자료집 I 책 230쪽 참조.

서 확률적으로 유사한 비율로 존재하는 경우 보통 필적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감정하지요.

답 : 예.

문 : 이와 같이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그 필법의 유사비율이 어느정도 되면 동일필적으로 결론짓나요

답 : 동일한 필적이 70퍼센트이면 동일 필적, 45퍼센트 이하이면 상이한 필적, 45-60퍼센트이면 이동식별 불능, 60-70퍼센트면 동일, 불능중 택일합니다.

문 : 이진 필적감정이 필법의 특징에 관한 유사비율이 45퍼센트 이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필적이라고 판정하였나요

답 : 예.

문 : 그런데 증인은 이진 필적감정 모두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필법상의 유사비율에 관한 근거자료를 증인이 감정한 감정서에 첨부한 바도 없고 증인이 근무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에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지요

답 : 예, 그것은 감정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감정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거나 보관 안합니다.

문 : 그렇다면 이진 필적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필법상의 유사비율 문제는 모두 증인의 머리속에서 보고 계산하고 현재 또한 증인의 머리속에만 기억되어 있나요

답 : 그 당시 계산하고 분석하여 그렇게 판단했고, 지금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문 :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첨부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수사기록 354면 내지 374면⁷⁶⁾ 제시

문 : 이것이 증인이 작성한 필적감정서이지요

답 : 예.

문 : 이 감정서는 서울지검 강력 011963, 012032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인 바(수사기록 228면 제시)⁷⁷⁾ 수사기록 228면의 위 서울지검 강력 012032 감정의뢰에 의한 감정사항은 김기철 명의 유서 2매 등 5가지 필

74) 총자료집 I 책 232쪽 참조.

75) 총자료집 I 책 109쪽 참조.

76) 총자료집 I 책 127쪽 참조.

77) 총자료집 I 책 93쪽 참조.

적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여 달라는 것이었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증인이 한 감정사항은 위 유서 필적과 다른 나머지 필적의 이동여부로 변경되어 있어 본래의 감정의뢰 사항과 다르게 감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각각 이동여부를 감정하려면 복잡하므로 검사에게 전화해 "언어야 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유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그렇다면 유서와 다른 것들과의 이동여부를 감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여 그렇게 감정한 것입니다.

문 : 1991년 5월 15일자 감정서(수사기록 354면)⁷⁸⁾ 아래에는 감정방법이라고 하여 부동문자로 "현미경, 입체현미경, 비교확대기,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 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필의 구성과 배자의 형태...조형미, 필의 방향, 각도, 운필 상태를 검사하고...자음과 모음의 특징, 개인의 잠재습성 등을 주시 검사하였음" 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증인이 작성한 이진 각 필적감정서에는 한결같이 같은 내용의 감정방법이 인쇄되어 있는데, 증인은 모든 경우 있어서 실제로 위 인쇄된 감정방법에 따라 감정을 하였나요

답 : 거의가 그렇게 하였으며, 일부 생략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증인이 사용한 현미경, 입체현미경, 비교확대기,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있나요

답 : 예.

문 : 위 감정소견(가)항 '중 1, 유서필적과 중 4,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필적은 상호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 소견에 변함이 없나요

답 : 예.

문 : 위 '상호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는 뜻은 동일인의 필적이라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 업무일지 3매에 있는 모든 글자와

78) 총자료집 I 책 127쪽 참조.

유서에 있는 글자들을 낱말이 현미경, 입체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비교해 보았나요

답 : 낱말이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1차 육안 검사를 하고 미세한 특징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현미경 등으로 감정합니다.

문 : 증인은 위 업무일지가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3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는 사실을 아나요

답 : 감정 당시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고려하여 감정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어떻게 위 사실을 아나요

답 : 검사가 얘기하였습니다.

문 : 검사가 어떤 얘기를 하였나요

답 :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으니 동일한 부분만 감정대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문 : 여러 사람이 썼다면 필적감정에서 아예 제외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렇진 않습니다.

문 : 어느 부분이 다른가요

답 : 맨 앞장 연필글씨와 둘째장 다섯째칸 파란 글씨로 기재된 부분입니다.

문 : 위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일지와 유서가 감정불능이라는 결과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요

답 : 유서와 동일한 필적이 업무일지에 있는나에 주안을 두었지, 업무일지에 다른 사람이 쓴 부분이 있다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문 : 감정서에 그런 것을 기재하였나요

답 : 안했습니다.

문 : 기재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유서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문 : 업무일지내에 필적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뜻은 유사비율이 45퍼센트 이하라는 뜻인가요

답 : 예.

문 : 감정당시에 45퍼센트 이하 판정이 나왔나요

답 : 예.

문 : 업무일지에 3가지 필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나요

답 : 3가지 필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유서와 비교, 업무일지 맨 앞장, 두번째장 파란볼펜으로

쓰인 부분은 상호 동일특징이 잘 안 나타나 대조자료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문 : 국민연합, 김기설님 드림이라는 부분은 문자수가 적은데, 어떻게 감정할 수 있었나요

답 : 문자수는 적어도 개인 특징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 감정 가능한데 이 경우 특징이 발견되지 않고 대조문자 부족으로 이동 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감정하였습니다.

문 : 피고인 구속후 업무일지가 3가지 필적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답 : 모릅니다.

문 : 업무일지가 3가지 필적으로 쓰여졌다는 신문 보도를 읽었나요

답 : 못 보았습니다.

문 : 위 감정소견 (나)항에서 증인은 '증2.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과 증3. 주민등록본실신고서 필적은 상호 동일한 필적으로서, 증1. 유서필적과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정서와 속필, 필기구에 따른 변화점을 알 수 없어서 이동 여부를 논단할 수 없음'이라고 하였는데, 위 증2, 증3은 동일 필적이거나 이것들 각각과 증1. 유서필적과는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없다는 말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 증2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나요

답 : 모릅니다.

수사기록 533면⁷⁹⁾ 이하 1991년 5월 25일자 감정서 제시

문 : 이것도 증인이 작성한 감정서이지요

답 : 예.

문 : 수사기록 538⁸⁰⁾면에 감정대상인 증거물 2의 주민등록본실신고서는, 앞서의 수사기록 354면의 증거물 증3 김기설의 주민등록본실신고서와 동일한 것이고, 수사기록 538면의 증거물 4의 김기설의 누나에게 선물한 책자속의 메모2매는 앞서의 수사기록 354면의 증거물 증2 김기설의 가족의 제출한 필적 2매와 동일한 것이지요

답 : 예.

79) 총자료집 I 책 248쪽 참조.

문 : 검사신문서 1차 감정시나 3차 감정시보다 그 추가된 대조자료가 많아졌다고 진술했는데 그 추가자료가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전체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가요

답 : 김기설의 무인이 찍인 이력서, 김기설의 이력서, 책자 속의 메모외에 추가 자료인 김기설의 편지도 동일필적으로 모두 김기설의 필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사기록 355면⁸¹⁾ 제시

문 : 다시 수사기록 355면으로 돌아가서 증인은 감정소견 (다)항에서 "증1. 유서필적과 증5. 김기설에게 증정한 책표지에 기재된 필적 전체적인 대비문자가 부족하여 이동여부를 논단할 수가 없음"이라고 하였는데 보통 몇자 이상이 되면 감정이 가능한가요

답 : 자수가 적어도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면 감정이 가능하고,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수가 아주 많아 감정 가능하므로 몇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록 357면 내지 376면⁸²⁾ 제시

문 : 수사기록 357면 내지 376면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진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찍은 것이지요

답 : 연구소 사진실에 의뢰하여 찍었으므로 어느 사진기인지는 모릅니다.

문 : 몇배로 찍은 것으로 알고 있나요

답 : 몇배인 줄은 모릅니다.

문 : 위 사진들이 수사기록 356면⁸³⁾의 감정결과를 얻기 위하여 찍은 사진들 전부인가요

답 : 확실히 기억나지 않으나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 증인이 지목해서 사진을 찍게 한 것이지요

답 : 예.

문 : 위 사진에 표시된 특징들 외의 것은 감정시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나요

답 :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대표적인 것만 선정해서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수사기록 411면, 412면⁸⁴⁾ 제시

문 : 수사기록 411면과 412면의 감정서 역시 수사

80) 총자료집 I 책 250쪽 참조.

81) 총자료집 I 책 126쪽 참조.

82) 총자료집 I 책 128쪽 참조.

83) 총자료집 I 책 130쪽 참조.

84) 총자료집 I 책 167쪽 참조.

기록 411면의 "감정방법"에 기재된 대로 현미경, 입체 현미경등을 사용하여 윤필순서 조형미, 필의 방향등과 자음과 모음의 특징등을 주시 검사하였나요

답 : 예.

수사기록 271면 내지 274면⁸⁵⁾ 제시

문 : 증인이 위 감정서 증거물로 사용한 '수사기록 중의 진술서 2매'란 수사기록 271면 내지 274면의 피고인 명의 진술서인가요

답 : 예.

문 : 수사기록 271면 내지 274면의 진술서는 총 매 수가 4매인데 증인이 증거물로 사용한 진술서 2매는 위 4매중 어떤 것이지요

답 : 피고인의 이름이 나온 271면과 274면을 제외하고 272면과 273면의 것입니다.

문 : 증인은 위 진술서 2매와 위 감정서상 증거물 3으로 표시되어 있는 김기설 명의 유서 2매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면서 양 자료의 '필의 방향'을 비교해 보았나요

답 : 예.

문 : 피고인 명의 진술서와, 수사기록 18, 19면의 김기설 명의 유서 2매에 보이는 각 '필의 방향'을 비교할 때, 피고인 명의 진술서는 각 글자들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 쓴 경향이 있으나

답 :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문 : 김기설 명의 유서 2매는 각 글자들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기울어 쓴 경향이 있으나

답 : 기울여지지 않고 평행입니다.

문 : 피고인의 진술서와 유서가 서로 '필의 방향'이 상이하지요

답 :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보통 글자로 쓰다보면 글자의 방향이 어떤 상태에서 쓰느냐에 따라 변화성이 많습니다.

문 : 이진 김기설 명의 유서 2매에는 자음 'ㅎ'의 필법에 관하여 윗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써 'ㅎ'으로 쓴 것과 반대로 윗부분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써 'ㅎ'으로 쓴 것이 혼용된 필법상의 독특한 특징이 있지요

답 : 예.

85) 총자료집 I 책 109쪽 참조.

문 : 증인은 김기설 명의 유서 2매에서 자음 'ㅎ'이 쓰여진 것 중 'ㅎ'으로 쓰여진 것이 몇개이며, 'ㅎ'으로 쓰여진 것이 몇개인지 조사해 보았나요

답 : 갯수는 기억 안나나, 분류는 해 보았습니다.

문 : 'ㅎ'보다는 'ㅎ'이 많이 사용된 것이 틀림없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 명의 유서를 쓴 바로 그 사람이 유서의 필체와 같은 속필체로 동일한 분량의 글을 쓰는 경우 자음 'ㅎ'의 필법에 있어서 김기설 명의 유서 2매에 보이는 비율로 'ㅎ'과 'ㅎ'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수사기록 271면 내지 274면의 피고인 명의 진술서에는 자음 'ㅎ'의 필법에 있어서 오직 'ㅎ'만이 사용되고, 'ㅎ'으로 쓰여진 것은 전혀 없지요

답 : 예.

문 :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 진술서와 김기설 명의 유서 2매를 비교할 때 양자는 무엇보다도 얼른 눈에 띄는 필의 방향이 차이가 있고 유서 2매에 보이는 자음 'ㅎ'의 필법이 상이하므로 양자를 동일인이 쓴 필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지요

답 : 'ㅎ'을 두 가지로 쓰는 방법은 강기훈의 진술서뿐 아니라 김기설의 필적에서도 역시 나타나지 않고,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에 다른 희소성이 있는 특징이 많이 나타나므로 유서상의 'ㅎ' 필법은 최근에 변형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고 다른 유사한 부분을 분석하여 동일 필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압수물 7-2, 메모지⁸⁶⁾ 제시

문 : 여기서의 'ㅎ'의 필법이 유서상의 'ㅎ'의 필법과 비슷한가요

답 : 예.

수사기록 538면, 539면⁸⁷⁾과 541면 내지 561면⁸⁸⁾ 제시

문 : 증인이 작성한 수사기록 539면의 감정결과는 수사기록 538면의 감정사항에 따라 감정된 내용을 기재한 것이지요

86) 총자료집 I 책 105쪽 참조.

87) 총자료집 I 책 250쪽 참조.

88) 총자료집 I 책 253쪽에서 273쪽 참조.

답: 예.

문: 그렇다면 위 감정사항이 증거물 1 내지 7의 각 필적의 이동여부로 되어 있으므로 증인은 위 증거물 모두에 대하여 서로 필적의 동일여부를 감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상 증거물 2 내지 6은 동일 필적으로 사료되고 이것들은 증거물 1, 7과 상이한 필적이라고 되어 있어 증거물 1과 7의 이동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감정서에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1과 7은 같은 것으로 전체하고, 2-6이 같고 하여 두 종류가 같은 여부를 감정하였습니다.

문: 수사기록 541면 내지 561면의 각 사진들은 증인의 위 감정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검사 자료들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감정에 있어서 동일필적으로 사료한 경우는 유사비율을 몇 퍼센트로 단정했나요.

답: 70% 이상일 때였습니다.

문: 상이필적으로 사료한 경우는 유사비율 또는 상이비율 몇 퍼센트로 판정했나요.

답: 45% 이하일 때였습니다.

수사기록 540면, 89) 562면⁹⁰⁾ 제시, 565면⁹¹⁾ 제시

문: 수사기록 540면의 감정서에 관하여, 증인은 과거 이진 '전민련이 김기철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에 있어서 문제된 것처럼 원래의 책자에서 떨어져 나온 듯이 보이는 종이 조각들과 원래의 책자에 남아 있는 잔류부분을 비교하여 그 일치여부를 감정해 본 일이 있나요.

답: 예.

문: 몇회나 감정했으며,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답: 3-4차례 감정하였으며, 동일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 상식적으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주장되는 부분이 과연 원래의 책자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는 책자의 총편수, 책자의 제본에 관하여 낱장으로 하나씩 묶어 만들었는지 또는 여러 장으로 묶어 만들었는지 기본적인 책자의 제본방법, 제본에 사용되는 실과 접착제의 종류, 굵기, 전체적인 접착도 및 각

89) 총자료집 I 책 251쪽 참조.

면의 접착도 떨어져 나간 부분의 편수 및 남아 있는 흔적의 편수 위치 등을 검사해야 하지요.

답: 그런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정 당시 나타난 잔류부분은 3매였습니다.

문: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나요.

답: 대부분 현미경 관찰 시험이었습니다.

문: 증인은 증인이 감정한 바의 '전민련에서 김기철의 것이라 제출한 수첩' 1부의 총면수가 몇쪽인지 아나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위 수첩의 제본에 사용된 실과 접착제의 종류 및 접착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나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어느 한면도 떨어져 나가지 않은 완전한 형태의, 증인이 감정한 수첩과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제본된 전민련 수첩을 본일이 있나요.

답: 감정이 끝난 후에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문: 증인은 증인이 감정한 수첩의 잔류 부분의 편수가 총 몇 쪽인 줄 아나요.

답: 감정 당시 나타난 잔류부분은 3매였습니다.

문: 만일 수첩에서 떨어져 나간 편수가 증인이 감정한 3매 외에 더 있고 그것이 서로 인접해 있다면, 수첩의 잔류부분과 증인이 받은 떨어져 나간 3매만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감정이 불충분하고 그밖의 떨어져 나간 편수와 위치 및 현재 외관상 보이는 잔류부분 뿐만이 아니라 외관상 보이지 않으나 양쪽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면 남게 되었을 잠재적인 잔류부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다시 검사해야 하겠지요.

답: 떨어져 나간 편수가 4매인 것을 알고 감정하였으며, 수심메라면 감정하기 힘들다 4-5매 정도라면 감정이 가능합니다.

문: 4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나요.

답: 검사로부터 감정할 무렵에 들었습니다.

문: 위 얘기를 들은 것이 감정에 고려대상이 되었나요.

답: 예, 그러나 감정결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 위 4매를 확인하였나요.

90) 총자료집 I 책 274쪽 참조.

91) 총자료집 I 책 277쪽 참조.

답: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 수사기록 562면 내지 565면에는 모두 수첩 절취선 부분 '현미경' 사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현미경은 어느 나라 제품이고 배율이 어떻게 되나요.

답: 일제 현미경으로 찍은 것이며 배율은 모릅니다.

수사기록 587면, 588면⁹²⁾ 제시

문: 증인은 수사기록 587면 588면의 감정서에서 감정대상인 증거물 5가지가 모두 동일필적이라고 감정하였는데 이들 각각의 필법에서 보이는 유사비율이 몇퍼센트 가량되어 동일필적으로 감정하였나요.

답: 70% 이상 되었습니다.

수사기록 936면, 937면⁹³⁾ 제시

문: 증인은 수사기록 936면과 937면의 감정서에서 감정대상인 증거물 10개가 모두 동일필적이라고 감정하였는데 이들 각각의 필법에서 보이는 유사비율이 몇 퍼센트 가량되어 동일 필적으로 감정하였나요.

답: 70% 이상이었습니다.

검사 송명석

증인에게

문: 1980년 2월 증인이 허위감정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을 때 실은 증인이 원본을 가지고 감정하고 다른 사설감정인은 사본을 가지고 감정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때 증인의 재감정요구에 의하여 재감정 무죄가 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도 증인이 자백을 하면 불구속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증인은 결백을 끝까지 밝히기 위하여 부인하고 재판 받은 것인가요.

답: 예.

문: 이 판결이 당시의 판결문들인가요 이때, 증인에게 판결문 사본(1991년 10월 9일자 참고 자료⁹⁴⁾)을 제시

답: 예.

문: 증인이 검찰에서 계속 새로 발견되는 자료를

92) 총자료집 I 책 315쪽 참조.

연속적으로 감정의뢰 하여 매번 감정회보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웠으므로 5월 21일에 의뢰받은 것을 5월 23일, 5월 24일자 감정의뢰 받은 것과 합하여 5월 25일자에 1차로 감정회보를 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5월 29일자에 포함시켜 감정하였지요.

답: 예.

문: 5월 17일자, 2차 감정시 유서와 진술서를 대조하였고 유서와 수첩대조는 5월 29일에 하였지요.

답: 예.

문: 다른 감정회보할 때 유사필적 비율을 수자를 들어가며 기재한 사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오오니시 감정결과에 대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단순히 ㄹ, ㅁ, ㅂ을 비교해 통제한 것뿐이지요.

답: 예, 더구나 사본이었으므로 회소성 있는 특징을 못 찾았을 것입니다.

문: 업무일지에 관해 감정의뢰를 받은 것은 유서와 동일 필적 여부를 의뢰받은 것이지 업무일지내의 필적 상호간에 이동여부를 감정의뢰받은 것이 아니지요.

답: 예.

문: 업무일지 첫째장과 둘째장의 파란글씨 부분에서는 유서와 필적상 동일특징을 발견하지 못하였지요.

답: 예.

문: 수첩에 관해 온전한 수첩과 함께 가져가 대조해 가면서 감정해 달라고 의뢰받은 것인가요.

답: 온전한 수첩을 보긴 했으나 함께 대조의뢰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 4장이 떨어진 것을 온전한 수첩과 대조한 적은 없는가요.

답: 예.

문: 당시 전민련에서 제출한 수첩중 떨어진 부분은 그 사이에 온전히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 경계를 지워주고 있고, 앞쪽의 떨어진 부분이 육안으로 보아도 3-4장 이외에 더 여러장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증인의 절취선 불일치 감정이 그에 따라 달라질 상태는 아니었지요.

93) 총자료집 I 책 523쪽 참조.

94) 총자료집 II 책 130쪽 참조.

답: 예.

문: 당시 수첩의 파손정도가 심하지 않았나요.

답: 예.

문: 수첩감정을 하면 사진을 찍기 위하여 수첩을 해체하거나 접합부분을 풀려고 요청하였으나 검사가 문제가 될 것이니 반드시 원형보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극구 말려 하지 않았나요.

답: 예.

1991. 10. 9.

법원 사무원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공판기록 305)

* 증인선서서(김형영) <생략>

☐자료 나 4-5 (공판기록 306~317)

서울지방법검찰청
530-3114

1991. 10. 9.

수신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5부

발신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 송명식

제목 참고자료 제출

귀 법원 합의 25부에 공판 계속중인 91고합 1126, 1328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등 피고 사건에 관하여 감정중인 김형영의 허위감정죄 전력에 대하여 소명하기 위해 동인에 대한 각 판결문 및 신문기사를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법원 제3부 81노 158 판결
- 2. 서울형사지방법원 제4부 80노 5281 판결
- 3. 서울형사지방법원 80고단 2239 판결
- 4. 중앙일보 1982. 2. 24 보도 각 1부. 끝.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81도 158 허위감정
피 고 인 김형영(金炯永) 공무원

1989. 11. 19.생

주거 서울

본적 서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 11. 6. 선고,
80노5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건 각 인영을 허위로 감정하였다거나 허위감정에 관한 범죄를 인정할 자료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능히 수궁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릇쳐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배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거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23

재판장	대법원 판사	김 덕 주
	대법원 판사	김 중 서
	대법원 판사	정 태 균
	대법원 판사	윤 일 영

서울형사지방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30노 5281 허위감정
피 고 인 김형영(金炯永) 공무원

1989. 11. 19.생

주거 서울

본적 서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검 사 김 영 철(??)

변 호 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 7. 1. 선고,

80고단 22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은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한 본건 문제로 된 인영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단순한 기인 감정원에 불과한 한 광호, 동 유학근, 동 송순호 등의 감정결과와 동인들의 각 감정결과에 대한 증언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감정내용이 위 동인들의 감정내용과 상이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감정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감정이 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원으로서 위 국가기관의 전문감정에 관한 제반 시설과 자료, 판정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본 건 감정을 한 것이고, 위와같이 하여 작성된 본건 감정보고서는 자기가 실험한 결과 인식한 그대로 보고한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감정에 관한 전문적인 시설, 자료 등 갖추지 못하고 감정을 행하고 있는 위 개인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만으로 위 국가기관의 시설과 자료를 이용하고 그 판정기준과 방법에 따른 피고인의 감정결과를 사실과 상이한 허위의 감정이라던가, 또는 피고인이 실험하고 인식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보고한 것이라도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 가사 위에 나온 개인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사실과 부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허위감정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감정인이 자기가 실험하고 인식한 사실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인식, 내지 인 용하고 행하는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필경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위 허위감정죄의 범리를 오해한 위범이 있다는 데 있고,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립수사과학연구소 이화학과 문서감정실에 근무하면서 문서감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78. 9. 19. 10:00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 판사실에서 위 법원 78가합 158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의 감정인으로 선서한 다음 동 사건의 갑 제5호증과 동 제6호증에 각 날인된 공소의 오인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신에 반하여 그달 26. 위 인영 등은 서로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여 그시경 재판부에 제출하여서 허위감정을 한 것이다"라 함에 있고, 원심은 그 게시의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다스리고 있다.

우선 본건에서 허위감정죄가 성립하려면 논지와 같이 피고인이 그가 실험하고 인식한 내용을 그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인용하고 이와같은 감정을 하였다라는 점을 부정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개인 감정원들의 각 감정서나 동인들의 원심에서의 위 감정결과에 대한 각 진술은 피고인이 한 본건에 관한 감정서 사본(기록 41정 내지 49정) 기재내용과 당원에서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원 이인환의 감정결과 등을 모두 불 때 위 각 감정이 국가기관의 감정에 관한 전문적인 시설기구인 현미경, 확대투영기, 비교확대기, 단능문서감정기, 대조검사기, 계측루비 등 제반 최신 기구를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실험하고, 위 연구소의 판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공적 감정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불 때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인 원심 증인 오인환의 증언내용도 위 허위감정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하등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밖에 검사가 거증하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보아도 위 범의를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범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닦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파기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거 무죄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11. 6

재판장 판사 김 정 현
판사 박 동 섭
판사 이 정 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802고단 2239 허위감정
피 고 인 김형영(金炯永), 공무원

1939. 11. 19.생 ()

주거 서울 ()

본적 서울 ()

검 사 황진호

변 호 인 변호사 황계웅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형
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하학과 문
서감정실에 근무하면서 문서감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78. 9. 19. 10: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 판사실
에서, 위 법원 78가합 1583호 소유권이전등기 항소 등
청구소송의 감정인으로 선서한 다음, 동 사건의 강제5
호중과 등 제6호중에 각 날인된 공소의 오인영, 같은
오석근 같은 오성근 등의 인영을 감정함에 있어, 위
각 인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신에 반하여
그달 26. 위 인영 등은 서로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감
정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허위감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서의 판시 일부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증인 오인환, 한광호, 유학근, 송순호의 법정에서의
판시 일부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판시 일부 사실과 같은 취
지의 각 진술지제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한광호, 유학근, 오인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 판시 일부사실과 같은 취
지의 각 진술지제

1.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고인 작성의 감정서
사본(제41정부터 ---까지), 한광호 작성의 감정서
(제282정부터 2-95정까지), 유학근 작성의 감정서
(제288정부터 제295까지) 중 판시 일부 사실과 같
은 내용의 각 기재

1. 압수된 매도증서 2종(중제1, 2호)에 날인된 판시 각
인영의 현존 적용 범조 형법 제134조, 제152조 제1
항(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7조

1980. 7. 1

판 사 제 자 통

(공판기록 317)

* 중앙일보 82. 2. 24 기사 <생략>

(공판기록 318, 319)

* 홍성은, 윤석순 증인소환장 우편송달보고서 <생략>

☐자료 A-7 (동아, 91.10.10.)

이런... (Vertical text in a box, likely a transcription of a document or a specific section of text related to the case.)

95) 복사 불량으로 판독 불가.

☐자료 나-4-6 (공판기록 320~322)

노원옥 판사님께

저는 피고인 강기훈씨 검찰측 증인으로 서게 되는
홍성은입니다.

제가 판사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증인 소환은 철
회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기훈씨는 저희 학교 동문이
며 또한 제가 법정에서 서게 될 경우 저희 친구들과, 선배
님들, 후배들 모두가 저를 주시하기 때문입니다. 변호
인 증인이 아닌 검찰 증인으로 서는 것이 괴롭게 만
듭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도 또 다른 피해
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한달 동안 기자들
은 저를 만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동안 저는 피해다
녀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도리르씨 한 인터뷰
가 저의 존재를 노출시켰고 이 일로 인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육체적·정신
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거의 매일
기자들과 사람들을 상대하고 집에서조차 숨어지내야
만 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서게 되면 다시 세상 사람
들이 주시하게 되어 또 한번 매스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의 존재를 거의 잊어버렸는
데 다시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한 저의 존재를 숨기고 싶습니다. 제가 검찰에
진술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증거보전되어 있습니다.
강기훈씨와 대질신문을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았
습니다. 제가 한 말들은 신문에 다 나왔기 때문에 굳
이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설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측 증인뿐 아니라 변호사측 증인으로서도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사건에 끼어들
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번 사
건으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집에서는 불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그 동안의 일들을 숨김없이 다 진술
하셨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막상 편지로 쓰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잘 안되
는군요 판사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19일

홍성은·윤석순

자료 나-5-1 (공판기록 323~324)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 조서

제 5 회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기 일	1991. 10. 23. 10:00
재판장	판사 노원욱	장 소	제 1 호 법정
	판사 정일성	법정의 공개여부	공 개
	판사 이영대	고지된 다음 기일	1991. 11. 6. 10:00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피 고 인	강 기 훈		출 석
검 사	신상규, 송명석 및 임 철		각 출 석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박연철 및 이석태		각 출 석
증 인	김형영		출 석
"	홍성은 및 윤석순		각 불출석

재 판 장 전회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없다는 의견진술
 재 판 장 출석한 증인 별지조서와 같이 신문
 재 판 장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검사, 변호인)
 재 판 장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 고 인 증인 김형영의 진술은 허위라고 진술
 재 판 장 변론 속행(불출석한 증인 홍성은 및 윤석순의 재소환 명)

1991. 10. 23.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원욱

자료 나-5-2 (공판기록 325~348)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5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평 1126 자살방조
91 고평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김 형 영
생년월일 1939. 11. 19. 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공 무 원
주 거 서울

재판장 전회 신문시에 행한 선서가 계속 효력이 있음을 증인에게 고지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수사기록 589정, 1991. 5. 29. 감정서(2)96) 제시
문 : 이 감정서의 감정결과 가항을 보면, 수첩의 첫 어진 부분에서는 절취선에 잔류상태가 출몰되어 나타나 있는 바 잔류형태는 '3매 정도'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잔류부분의 매수가 3매인지 4매인지 또는 5매인지 확실치 않다는 뜻입니까.
답 : 검사에게 4매로 들었는데 나타난 것은 3매여서 그렇게 감정서에 기재했습니다.
수사기록 537정, 1991. 5. 25. 자 감정서97) 제시
문 : '유서는 싸인펜 속필이고, 주민등록본실신고서, 이력서, 누나가 선물로 받은 책속의 메모, 김기설의 친구가 받은 편지와 카드는 전체적으로 정서이며, 수첩은 정서형태와 싸인펜 속필형태가 차이가 있어서 대조자료로서는 부적합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서와 나머지 필적들과의 대조가 적합치 않다는 뜻이죠.
답 : 예.
문 : 다시 말하면 정서와 속필은 동일필적 여부를

는단하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답 : 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문 : 증인은 '증거물 (2), (3), (4), (5), (6) 필적과 (1)유서 및 (7)수첩에 기재된 필적과는 정서와 속필상의 변화상태는 알 수 없으나 현재상태는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고 하였는데 '현재상태에서는'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 : 현재 주어진 증거물을 이야기합니다. 편지에는 자료가 많고 술을 먹고 쓴 필적도 있어 일관성 있는 필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 : 현재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답 : 그런 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록 354정, 감정서98) 제시
문 : 이 감정서의 증거물 라항에 '증4,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3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일지 3매를 감정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답 : 예.
문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 6. 24. 구속된 후 검찰에서는 업무일지를 피고인이 쓰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여 오다가 업무일지의 일부가 임무영이란 사람이 작성한 사실을 7월 초순경에야 발견하고 한때는 임무영을 유서대필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벌인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 감정을 의뢰받은 5. 13.경 검사가 증인에게 "업무일지가 한 사람이 아닌 몇 사람에게 의하여 씌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점을 감안하여 감정하라"고 얘기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답 : 감정의뢰 받을시 그런 얘기를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문 : 6. 27. 의뢰하여 7. 4. 감정 회보한 강기훈의 항소이유서의 감정은 원본으로 하였나요.
답 : 예, 원본으로 감정하고 검찰에 되돌려주었습니다.
문 : 다다 인터내셔널에서 제출한 김기설의 이력서와 함께 인사기록 카드는 감정하지 않았습니까.

96) 총자료집 I 책 519쪽 참조.

97) 총자료집 I 책 248쪽 참조.
98) 총자료집 I 책 128쪽 참조.

답 : 어디에서 제출하였는지는 모르나 김기설의 이력서를 감정하였고 그 이력서와 함께 첨부된 서류가 인사기록 카드인지는 모르나 그 서류도 이력서와 함께 감정하였습니다.

문 : 이력서는 정서체인가요

답 : 예.

문 : 이력서에 첨부된 서류는 속필체인가요

답 : 이력서와 별 차이없이 정서체에 가까웠습니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필적감정의 방법의 첫째는 '전체적인 필의 구성과 배자의 형태'를 주시 검사하는 것이지요

답 : 그것 뿐만 아니라 필세, 필순, 조형미, 방향, 각도, 집필상태, 기필부분, 종필부분, 기타 특색, 숙련 상태, 개인의 습성, 잠재특성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는 것입니다.

문 : 증인의 감정서에는 감정의 대상을 전체로서 볼 수 있는 유서의 한편 또는 진술서의 한편 또는 편지, 또는 메모의 한면을 보여주는 사진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사진은 의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 부분을 찍어 첨부하는 것이고 전체 사진 촬영은 필요 없으므로 전체적인 사진은 첨부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회보서 부분에는 전체 문서의 복사본이 첨부되고 회보서에는 의뢰자에게 원본을 반환하므로 전체 문서의 복사본이 불필요하여 첨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증인이 가지고 있는 회보서 부분에는 전체 문서 복사본이 있습니다.

문 : 증인은 대학 논문이나 레포트를 제출하여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편지나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도 문단의 처음 글자는 한두칸 몰려서 시작하는 습관이 붙게 되는데 피고인 강기훈의 진술서와 편지에서는 그와 같이 한두칸 몰려서 쓰기 시작하였는데 김기설의 유서는 막바로 쓰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였나요

답 : 그런 문제는 별로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문 : 증인은 지금까지 필적감정에 임하여 오면서 한 눈에 동일한 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경험

이 있었나요

답 : 한 눈에 동일하다고 감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 : 증인은 이 사건에서 감정한 필적증에서 김기설의 유서와 피고인 강기훈이 작성한 진술서, 편지 등이 한 눈으로 보아도 같은 필적임을 알 수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에 의한 감정끝에 동일한 필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인가요

답 : 세심하게 검토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수사기록 354면부터 376면 사이의 1991.5.10., 5.15. 자 감정서⁹⁹⁾에 관하여

문 : 증인은 유서와 업무일지 필적과는 '필의 구성과 배자의 형태', '기필부분과 종필형태', '자음과 모음'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된다고 하면서 첨부된 사진본에 몇군데 주선표시만을 해놓았는데, 유서와 업무일지의 필의 구성과 배자가 어떠하다는 것이며 기필부분과 종필형태는 또 어떠하였다는 것이며 자음과 모음 등이 상호 비슷하였다면 대체 어떤 자음과 모음이 비슷하였다는 것인가요 좀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여 줄 수 있나요

답 : 필의 구성은 상하 직선으로 구성되고, 배자는 밀집한 형태가 많았으며, 기필부분은 구부리면서 시작하고 종필형태는 뾰족올라가며 자음중 'ㄹ', 'ㄱ', 'ㄱ', 'ㄴ', 'ㅎ', 'ㅇ' 등이 비슷하고 모음 중 'ㅏ', 'ㅑ' 등이 비슷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유서와 업무 일지 사이에 '필획간의 연결부분과 교차되는 위치', '운필방향', '특정필획의 침범', '자음을 두 종류로 기재'하는 등의 잠재습성 등에서도 '특정적'인 유사점을 관찰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글자의 필획간의 연결부분인지 교차되는 위치는 어느 지점인지, 특정필획의 침범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자음을 두 종류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자음이 어떤 방식으로 두 종류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지 설명하여 줄 수 있는가요

답 : '을', '위', '준', '선'자 등의 필획간의 연결 부분과 교차되는 위치가 같으며, '준', '선', '민' 등에 필획의 침범이 있으며 'ㅎ'을 두 종류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유서필적과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99) 총자료집 I 책 126쪽 참조.

필적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등과는 '외형상의 구성'과 '기필부분의 세리프형태' "ㄷ"을 좌우로 기재하는 습성 '운필각도' 등에서 차이점이 관찰된다고 하였는데 외형상의 구성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며 '기필 부분의 세리프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며 '운필각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 외형상의 구성은 유서가 혼란된 상태에서 안정성이 없게 기재된 것인데 비해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등은 안정된 상태에서 기재된 것이며, 기필부분의 세리프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구부린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며, 운필각도는 ㄱ, ㅈ 등의 각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 : 증인은 유서와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주민등록분실신고서와는 '종필방향', '필획의 연결상태', '자음의 구성' 등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고 하였는데 종필의 방향은 어떠하였고 필획의 연결상태 중 유사하다는 것은 어떤 글자를 두고 지적한 것이며 자음의 구성이 같은 글자는 어떤 것이었나요

답 : 종필방향은 마지막 끝을 올렸고 전체적으로 필획의 연결상태가 유사하며 자음중 'ㄱ', 'ㄴ' 등의 구성이 같습니다.

문 : 증인은 유서는 속필로 기재한 숙련된 필적이 고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서는 정서인 바 정서와 속필 및 다른 필기구에 의한 변화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이동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증인이 감정한 위 필적들이 동일인의 필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요

답 : 문자 그대로 동일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가능성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록 357면부터 365면¹⁰⁰⁾ 제시

문 : 증인이 유서 필적증 업무일지와 동일한 특정 부분을 붉은선 표시를 하여 놓았는데 그 내용은 'ㅎ'자, 'ㄹ'받침, 'ㄴ'자, '행위, 위해, 대책위'의 '위'자, '생각' 중의 'ㅎ'부분, '쟁취' 중의 'ㅎ'부분이 특히 주목되었다는 것인가요

답 : 특히 주목했다는 것이 아니라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진을 찍어,

100) 총자료집 I 책 131쪽 참조.

첨부, 표시한 것입니다.

수사기록 제366면부터 371면¹⁰¹⁾ 제시

문 : 증인이 업무일지 중에서 특히 주목한 점은 '전문대, 분신', '전민련'이라는 글자중의 'ㄴ'받침, '정연식'의 'ㅇ'과 'ㄱ'과 'ㄴ', '학생'중의 'ㅎ', '대책'중의 'ㅑ', '직업병'중의 'ㅇ', '투위'중의 '위', 그리고 'ㄴ'자 등에서 유서의 글씨와 유사한 점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답 : 예.

수사기록 제 372면 부터 375면¹⁰²⁾ 제시

문 : 김기설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책자에 적은 메모는 그 기재년도가 7-8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양 필적 사이의 필법의 변화는 어떠한 것인가요

답 : 극히 일부의 미세한 변화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특이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사기록 409면에서부터 제421면까지 1991. 5. 17. 자 증인 작성의 감정서¹⁰³⁾에 관하여

문 : 증인은 이 감정서에서 피고인 강기훈의 수사 기록상의 진술서, 김기설의 친구 홍성은으로부터 제출 받은 메모지, 김기설의 유서를 비교 감정하였는데(다시 수사기록 제413면¹⁰⁴⁾ 제시) 이면에서 증인은 진술서 상의 '학생들이' 메모상의 '생각한다', 유서상의 '생각합니다' 중의 'ㅎ'을 쓴 필법이 동일하다고 예시하였는데 같은 글자 중의 '학, 한, 합'의 'ㅎ'자가 각각 다르게 쓰여진 사실은 인정하는가요

답 : 한 사람이 'ㅎ'을 두 종류로 쓴 것으로 보아 집니다.

문 : 그리고 진술서상에 피고인 강기훈이 '학생들'이라는 글자를 세번 이상 기재하였는데 그중 한 부분만 확대하여 예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의뢰자의 이해하기 좋도록 특징적인 부분만 발췌하여 촬영첨부한 것입니다.

수사기록 414면¹⁰⁵⁾ 제시

문 : 증인은 진술서 중의 '경찰', 메모중의 '영혼',

101) 총자료집 I 책 140쪽 참조.

102) 총자료집 I 책 141쪽 참조.

103) 총자료집 I 책 165쪽 참조.

104) 총자료집 I 책 169쪽 참조.

105) 총자료집 I 책 170쪽 참조.

유서중의 '형'이라는 글자중의 'ㅇ' 부분이 동일특징을 갖는다고 예시하였는데 그 부분만 보면 비슷하지만 예시된 녀자 내지 다섯자의 필의 방향이 달라 전혀 다른 필치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답: 필의 방향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다음에 오는 글자나 문장, 기재여건, 쓴 장소와 자세에 따라 한 사람이 써도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필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명동성당에 시필한 것과 진술서 등을 보면 한 사람이 써도 쓴 장소와 자세, 기재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415, 416, 418, 419면(106) 제시

문: 증인은 수사기록 415면에서는 '에'자가, 416면에서는 '위'자가, 418면 중에서는 'ㄴ' 받침의 침범부분이, 419면에서는 '화'자가 서로 동일특징을 가진다고 예시하였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420면(107) 제시

문: 증인은 이 부분에서 피고인 강기훈의 진술서 중의 '옥상에서'에서의 '에'와 유서중의 '하기에는'에서의 '에'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두개의 '에'가 필순이 서로 다른 것은 인정하지요.

답: '하기에는'에서의 '에'가 붙어서 썼을 뿐이며 위 두개의 '에'는 모두 위에서 시작하여 내려가는 식으로 기재된 것으로 필순이 같은 것입니다. 유서의 다른 '에'자도 같은 필순으로 쓴 것이고 또한 증인이 원본을 현미경으로 정확히 필순이 같음을 확인한 것으로 명백한 것이고 변호인께서 사본을 가지고 외형상으로만 보아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입니다.

수사기록 제421면(108) 제시

문: 증인은 이 부분에서 어떤 특징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였나요, 피고인의 진술서중에서 발췌한 '진압부대가' 중에서 '진'자의 'ㄴ' 받침은 침범되지 않고 아래 메모와 유서 부분에서는 침범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동일특징인가요.

답: 'ㄴ' 밑에 'ㅣ'가 침범되어 있으며, 'ㄷ'은 밑

106) 총자료집 I책 171, 172, 174, 175쪽 참조.

에서 구부러지면서 시작되며 마지막 'ㄷ', 둘째 '택' 부분은 살짝 올라온 부분이 동일한 부분입니다.

문: '진'자의 'ㄴ' 받침이 침범되지 않은 것은 맞지요.

답: 예, '진'자의 'ㄴ' 받침이 침범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사기록 제536면부터 제565면까지, 91. 5. 25. 작성의 감정서(109)에 관하여

수사기록 제541면(110) 제시

문: 증인은 유서상의 '민중'과 김기철의 편지상의 '민중'이 서로 상이하다는 예시를 하였는데, 'ㄹ'자를 2획으로 처리한 점, 종획 'ㅣ'가 반듯하게 그려진 점, 'ㄷ'자의 'ㅇ'과 'ㅣ'의 접속된 위치, 'ㅌ'자의 'ㅇ'과 'ㅣ'가 접속된 위치등은 동일하지 않은가요.

답: 'ㄹ'자를 2획으로 처리한 점, 종획 'ㅣ'가 반듯하게 그려진 점은 같으나 'ㄷ'자의 'ㅇ'과 'ㅣ'의 접속된 위치는 그 기재의 방향과 연결이 다르고 'ㅌ'자 'ㅇ'과 'ㅣ'는 길고 짧음과 방향, 그리고 연결 위치가 다릅니다. 사진을 보시면 누구나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사성은 감정에 있어 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개인의 독특한 회소성에 착안해야 할 것입니다.

문: 정서체와 흘림체 사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필법의 잠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541면(110) 제시

문: 정서와 속필은 육안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의 글씨로 보기 쉬운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동일성 여부를 대조하여 보기 위하여 착안하는 관점은 무엇인가요.

답: 정서나 속필이나 필적의 미세한 개인 고유 습성이 나타나느냐의 여부에 따라 대조할 수도 있고 있기도 합니다.

문: 증인이 이 유서와 전민련에서 제출한 수첩의 글씨가 동일한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예시를

107) 총자료집 I책 176쪽 참조.
108) 총자료집 I책 177쪽 참조.
109) 총자료집 I책 248쪽 참조.
110) 총자료집 I책 253쪽 참조.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한눈으로 보아도 동일한 필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나요.

답: 이 감정서가 아닌 관련된 다른 감정서에 예시된 부분이 있고, 한눈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문: 증인은 위 수첩중 전화번호 기입부분 중 연필로 기재된 부분 밑에 강한 필압 형태가 나타나 있으나 그 필압 아래 나타나 있어야 할 필압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감정서 중에 필압이 나타나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수첩이 석장이었는데 몇군데는 연필로 된 부분이 있었는데 연필로 강하게 기재된 부분 뒷부분에 필압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

문: 어떤 부분이 연필로 기재된 부분인가요.

답: '서부경찰서 정보과', '저녁', '(0342) 42-7481' 등입니다.

문: 증인은 절취된 석장의 순서를 알고 있었나요.

답: 몰랐습니다.

수사기록 제585면부터 590면까지 증인이 1991. 5. 29. 작성한 감정서(111)에 관하여

수사기록 제571면(112) 제시

문: 증인은 피고인이 진술서 중 '오발하면서', 노트중 '당면 ts' 중의 '면'과 유서중의 '하면서'의 '면'이 동일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ㄴ'의 획형을 기재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은 우상향으로 쓰고 있고 유서에서는 수평으로 써어진 사실은 인정하겠지요.

답: 예. 수사기록 572면(113) 제시

문: 증인은 유서상의 '...는 것을' 중의 '것'이라는 글자와 홍성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메모중 '...것인지' 중의 '것'이라는 글자와 피고인의 진술서중 '...것은' 중의 '것'이라는 글자가 동일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유서와 메모의 '것'은 'ㄱ'을 일획으로 쓰고, 'ㅅ'을 둘로 나누어 쓰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ㄱ' 'ㅅ' 'ㅣ'를 나누어서 쓰고 있고 특히 'ㄱ'의 종획부분 'ㅣ'의 밑부분을 'ㅅ'자의 왼쪽 'ㄴ'으로 겸용하고 전혀 다른 필법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요.

답: 유서에서는 잠깐 쉬었을 뿐이며 필법은 동일

111) 총자료집 I책 318쪽 참조.

한 것입니다.

수사기록 제570면(114) 제시

문: 증인은 유서, 강기훈의 진술서, 강기훈이 옥중에서 동생에게 보낸 편지 필적의 이동여부를 감정해달라는 의뢰에 대하여, 옥중편지는 수차 복사가 반복된 불투명한 사본이므로 '이동여부를 논란할 수 없음'이라고 회보하였는데, 옥중편지와 '유서에 너무나 다른 특징들이 많아서 일부러 감정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요.

답: 원본으로 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본이라 감정하지 않았습니.

수사기록 제935면에서 제954면 사이의 증인이 1991. 7. 4. 작성한 감정서(115)에 관하여

문: 증인은 개별적인 글자 또는 글자의 구성부분의 유사성을 찾는데 주력하였고, 증인이 주목한 부분은 전체 감정대상의 글자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만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가요.

답: 그렇지 않고, 누가 봐도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 첨부하였을 뿐이며 감정은 전체를 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지적한 부분은 숙련된 필치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요.

답: 개인 고유 습성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록 941면(116) 제시

문: '보'자와 '오'자가 비슷하게 쓰여졌다고 감정한 것인가요.

답: 예, 이렇게 '오'자 등의 가운데를 중앙에서 돌리는 것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고, 특히 여기에서 보면 연결되는 위치와 방향이 일직선이 아니라 돌아가며 내려오는 것, 종필 부분을 올리는 습성 등이 우리들이 보는 감정의 주안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부분이 조금 같다, 안같다는 차이는 조금 쓰면 나옵니다.

문: 필적감정시에 비슷하게 보이는 날자를 확대 비교하면 더욱 비슷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지요.

답: 그런 것은 없습니다.

112) 총자료집 I책 318쪽 참조.
113) 총자료집 I책 319쪽 참조.
114) 총자료집 I책 317쪽 참조.
115) 총자료집 I책 521쪽 참조.
116) 총자료집 I책 쪽 참조.

검사 승명석

증인에게

문 : 증인이 전회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사실은 외부 기관에 발표하거나 학위논문 등을 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감정요원들과 공동으로는 198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보에 "한글운필 형태 분류와 회소성에 대한 연구" 등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이것이 그 논문들인가요.

이때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보에 수록된 "한글의 운필형태 분류와 회소성에 대한 연구", "불명문자 현출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다(1991. 10. 23. 자참고자료). 117)

답 : 예.

문 : 필적감정에 있어서 대조자료 상호간에 70% 이상의 동일특징이 나타나면 동일필적으로 감정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으나 그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통계적으로 두 대조자료간에 유사성이 70%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또한 자모의 형태, 필의 형태상의 유사성을 평면적으로 비교한 유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 : 예.

문 : 쉽게 말하면 서명 석자라도 필적을 판단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을 평면적, 통계적으로만 비교하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답 : 예.

문 : 다시 말하자면 원래 필적이란 그 기재하는 시기나 장소, 필기구나 기재위치, 자세, 기재 당시의 심리나 건강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적감정에 있어 그 대조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의 대조기준을 어디에 두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한글은 문자획 및 형태가 단조롭고 쓰기 쉬운 문자에 속하여 많은 사람에게서 공통적인 유사성이 상당 부분 현출되고 따라서 이러한 변화상태와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유사성을 형태적으로 비교, 대조하여 필적의 이동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고, 한글 필적

117) 총자료집 III책 106쪽 참조.

감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유사성 외에 특히 개인의 독특한 회소성을 고려,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야 하고 오랜 필적감정에 대한 연구와 전문적 경험을 토대로 자모의 형태는 물론 필세, 필압의 형태, 종필처리 부분, 문자의 연결 상태, 필운 상태, 미세한 부분의 독특한 습성에 나타나는 이러한 개인의 독특한 회소성의 현출빈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위 논문에 발표된 내용도 이러한 취지로 한글에 나타날 수 있는 회소성을 연구한 것이지요.

답 : 예.

문 : 필적 감정회보서 작성에 있어 두 가지 대조자료상에 동일특징이 발견된 부분과 동일특징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 항상 있게 되는 바, 동일하다고 감정을 하는 경우 동일특징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을 적시하지는 않는 것이고 역시 상이하다고 감정하는 경우 동일특징이 발견된 부분을 적시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그 이유는 만약 동일하다고 감정하는 경우 동일특징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을 모두 적시하여야 한다면 순논리적으로는 글자 한자 한자에 대하여 모두 동일특징이 발견되었다거나 동일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시하여야 하고 이전의 대학노트, 수첩과 같이 자료가 많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감정회보서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전회 증언에서 오오니시 요시오라는 일본 사람은 필적 전문감정인이 아니고 박물관 직원으로 문서정리를 주도하고 있던 사람으로 안다고 증언했지요.

답 : 예.

문 : 검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오니시 요시오는 필적 전문감정인이 아닌 테도 이시가와 가즈오에 대한 유괴사건 재판에서 개인적인 감정의견을 발표하였다가 일본 재판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아는가요.

답 : 그런 사실은 잘 모르나 오오니시라는 사람에게 일본 필적감정 전문기관에서 필적감정 업무를 담당하

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감정할 때 일단 육안 관찰하고 그후 현미경 관찰하는가요.

답 : 예.

문 : 육안으로 관찰할 때 선입견이 서지 않는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육안으로 보아 동일한가를 보고 특징적인 부분만 감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감정하나요.

답 : 전체를 다 감정합니다.

문 : 4명이 감정하였다고 했는데 각자 감정하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감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것인가요.

답 : 증인이 감정한 후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협의,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심의하므로 저희들이 보관하는 감정회보서 부분에는 '공동심의필' 하고 각자 서명 날인합니다.

문 :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할 때 현미경 관찰 등을 하였나요.

답 : 예, 4명이 돌아가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 : 감정결과 70% 이상이면 유사한 것으로 45% 이하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육안 관찰로 개인 특성을 찾고 그 특징이 몇 퍼센트인가를 정밀 관찰하며 일본이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문 : 감정 오차율은 어떤가요.

답 : 그에 관한 통계는 없으나 오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문 : 감정결과에 대해 감정회보한 것중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된 것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한번 감정불능 판정된 자료가 사후에 다른 자료가 나타났다고 해서 감정이가능하다고 감정결과가 변

복될 수 있나요.

답 : 감정이 번복된 것이 아니라 자료 부족으로 감정이 유보되었다가 다른 자료가 있어 감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 : 책자 필적감정은 45-60%로 판단했다가 후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닌가요.

답 : 추가로 자료가 더 나와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 : 자수가 적을 때는 개인 특징을 단정할 수 없지만 자료가 추가되면 개인 특징을 대조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추가된 자료와 책자 글씨가 동일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나요.

답 : 추가 자료를 감정하여 책자 글씨와 동일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문 : 검찰에서 의뢰할 때 추가자료가 책자 글씨와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나요.

답 : 예, 말은 들었으나 감정인으로서 다시 필적감정도 하여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문 : 70%의 의미에 대하여 지금 증언한 것을 토대로 추후 상세한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요.

답 : 예,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91. 10. 23.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자료 나5-3 (공판기록 339~351)

서울지방검찰청

1991. 10. 23.

수신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제25부

발신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제목 : 참고자료 제출

귀원 91고합 1126, 1328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일본인 오오니시 요시오에 대한 인적사항 등 참고사항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사실조치 회보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첨부 : 사실조치 1부. 끝.

법 무 부

김이 23110-13555 503-7053 1991. 9. 24.

경유 검찰총장(강력과장)

수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제목 사실조치 결과통보

1. 서울지검 형일23110-21952(91. 8. 27)와 관련입니다.

2. 귀청에서 사실조치를 요청한 일본인 오오니시 요시오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첨부 외무부 공문사본 1부. 끝.

법 무 부 장 관

대한민국

외 무 부

아일 23110-44942 720-2317 1991. 9. 11.

수신 법무부장관

제목 사실조치

대 : 김이 23110-12704

대호로 요청하신 오오니시 요시오에 관한 주일 대사관이 파악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

아 래

1. "오오니시"는 동경 국립박물관의 명예관원으로서, 고문서 정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재판과 관련된 필적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인물은 아니라 함(명예관원은 20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임명하며 현재 동경 국립박물관에 40명 정도 있다 함).

2. 동인이 필적감정에 관여한 경우로서는 1963년 당시 고교 1년생이 "사야마"시에서 유괴된 사건 발생시, 동 사건혐의로 체포된 부락민 "이시가와 가즈오" (당시 24세)가 보냈다고 하는 협박장이 "이시가와" 본인의 필적인지의 여부에 대해 "오오니시"가 혁신계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감정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음(동인의 감정 의견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3. 상기 "사야마" 사건은 부락민 출신의 피의자에게 부당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부락민에 대한 차별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락해방동맹 등 단체로부터 사야마 차별 재판반대운동이 전개된 바 있음(재판결과 :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80. 2월 재심청구 기각). 끝.

외 무 부 장 관

동북아1과장 전결

☐자료 나5-4 (공판기록 352~368)

서울지방검찰청

1991. 10. 23.

수신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5부

발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송명석

제목 참고자료 제출

귀 법원에 공판 계속중인 91고합 1126, 1328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감정중인 김형영 등 공동명의의 논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첨 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보 수록 논문 2부. 끝.

(공판기록 353~359)¹¹⁸⁾

* 김형영 외 3인, 「한글의 운필형태분류와 회소성에 대한 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보』 Vol.17, 1985.

(공판기록 360~368)¹¹⁹⁾

* 김형영 외 3인, 「불명문자 현출에 대한 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보』 Vol.17, 1985.

118) 총자료집 III책 115쪽 참조.

119) 총자료집 III책 107쪽 참조.

☐자료 나-5-5 (공판기록 369~372)

한 증거서류를 별첨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증거제출		1991. 10. 23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사건 91고합 1126 자살방조 피고인 강기훈(姜基勳)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5부 귀중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			
번호	서류이름	작성자	작성일자
1	방명록(성남터사 랑 청년학우회)	김기설	1989. 10.경
2	이력서	상 동	1990. 11. 14 이후
3	방명록(전교조 원 주지회)	상 동	1991. 3. 23
4-1	대유확보 원고	상 동	1990. 6.초
4-2	대유학보	대유공전	1990. 6. 7.
5	메 모	김기설	1991. 4.경
6	청구서	상 동	1991. 3. 30.
7	상황일지 11매 (성남 민청련)	김기설 등	1989. 9. 22- 1990. 1. 15.
8	노 트	김기설 등	1991. 3.말경
9	대 봉 투	김기설	1991. 3.말경
10	방명록(수원 민주 화 청년연합)	상 동	1990. 1. 13.
11	책(한국사회와 자 본론 강의)	상 동	1990년 ?
12	파일 표지	상 동	1991. 3.말경
13-1	명 함 (1)	상 동	1991. 1.경
13-2	자 술 서	박동희	1991. 6.말경
14-1	명 함 (2)	김기설	1991. 3.말경
14-2	진 술 서	고상만	1991. 6. 30.
15-1	우편봉합염서	강기훈	1986. 4.
15-2	상 동	상 동	1986. 5. 22

번호	서류이름	작성자	작성일자	비 고
15-3	우편봉합염서	강기훈	1986. 6. 7.	영등포교도소→강기훈
15-4	상 동	상 동	1986. 6. 19.	상 동
15-5	상 동	상 동	1986. 10. 1.	마산교도소→강기훈
15-6	상 동	상 동	1986. 11. 25.	상 동 →강은옥
15-7	상 동	상 동	1987. 4. 16.	상 동 →강은옥
15-8	상 동	상 동	1987. 5. 9.	상 동 →강은옥
15-9	상 동	상 동	1987. 6. 25.	상 동 →강은옥
15-10	상 동	상 동	1987. 8. 8.	상 동 →강은옥
16-1	카드(봉투 및 내용)	상 동	1986. 12. 20.	상 동 →강기훈
16-2	상 동	상 동	1986. 12. 20.	상 동 →강은옥
17	보 고 서	상 동	1988. 3. 16.	민중의당 성동지구당→중앙위 선전위
18	책(창미의 이름)	상 동	1990. 7. 25.	이영미에게 선물한 책 뒷표지 안쪽의 필적
19-1	감 정 서	大西芳雄	1991. 7. 9.	일본국 감정인의 감정서
19-2	감정물건 사진첩	상 동	상 동	위 감정서의 감정물 사진 및 확대사진

☐자료 나-5-6 (공판기록 373~379)

증인신청

사건 91고합 1126 자살방조
피고인 강기훈(姜基勳)

위 사건에 관하여 별첨과 같이 증인을 신청하오니
환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명단 및 입증취지

이름	신분관계	입증취지
1. 이지혜	방송통신대 재학생 1991. 5. 5. 김기설로부터 자살의도 처음 들음.	김기설 분신전의 정황 등
2. 이보은	전민련 실무자 분신 당일 새벽 김기설과 같이 있으면서 분신 만류. 조작시비가 벌어진 전민련 수첩 보관자	김기설 분신전의 정황, 전민련 수첩 보관 및 제출 경의 등
3. 이영미	강기훈의 여자친구 김기설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의 대학동창	김기설 분신후의 강기훈 주변 등 정황관계 및 서증 입증

- 4. 김범열 단국대 민주동문회 회장 김기설 분신 후의 홍성은 주변 등 정황관계
- 5. 김시중 '성남터사랑 청년회' 관계자 성남터사랑청년회 방명록 등의 김기설 필적
- 6. 김병희 중대 학생 성남터사랑청년회 방명록 등의 김기설 필적
- 7. 전현철 전교조 성남지회장 성남터사랑청년회 방명록 등 제출 위 성남터사랑청년회 방명록에 서명
- 8. 박대순 전교조 원주지회장 김기설 필적이 들어 있는 원주회 방명록
- 9. 홍중희 원주 시민운동단체 회원 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의 김기설 필적 위 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에 서명
- 10. 박찬수 한겨레신문 기자 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의 입수 경위 등 위 방명록 공개, 필적감정 의뢰 등
- 11. 박선옥 전민련 실무자 김기설이 작성한 '청구서' 등 제출
- 12. 박경민 대우공전 및 방송통신대 재학생 김기설 분신 전 정황 및 대우공전 원고의 김기설 필적
- 13. 이보령 승의여전 학생회장 승의여전 메모의 작성 및 제출경위 '승의여전 메모' 보관 및 제출
- 14. 최수미 승의여전 학생회 부회장 승의여전 메모의 김기설 필적
- 15. 김지연 승의여전 학보사 편집장 승의여전 메모의 김기설 필적
- 16. 강효남 수원 민청련 관계자 수원 민청련 방명록의 김기설 필적 등 김기설 필적이 들어 있는 수원 민청련 방명록 제출
- 17. 김희택 전민련 실무자 수원 민청련 방명록의 김기설 필적 등 위 수원 민청련 방명록에 서명
- 18. 이창희 성남 민청련 관계자 성남 민청련 상황일지의 김기설 필적 등 김기설 필적이 들어 있는 위 민청련 상황일지 발견
- 19. 정일부 성남 민청련 관계자 성남 민청련 상황일지 업무내용 작성
- 20. 장준호 김기설 분신 당시 김과 한방에서 자취 김기설 분신전 정황 및 속초 동우전문대 녹취노트 속의 김기설 필적 등
- 21. 김용삼 김기설 명함 소지자 명함의 김기설 필적 등
- 22. 고상만 속초 동우전문대생 김기설 명함 제출 명함의 김기설 필적 등
- 23. 임무영 전민련 실무자 김기설 분신전의 정황 및 업무일지 필적관계 등 서울구치소 수용증
- 24. 권태평 강기훈 어머니 김기설 분신과 관련한 강기훈 주변관계, 강기훈 옥 증편지 등의 필적 등
- 25.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 김기설 분신후의 전민련 주변관계, 업무일지 제출 성동구치소 수용증 경위 등

- 26. 이동진 전민련 실무자 김기설 분신 후의 전민련 주변관계, 업무일지 내용 일부 작성 경위 등
- 27. 최경환 김 분신 당시 범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 김 분신 직후의 조작시비 전민련 수첩사본 일부 소지 전민련 수첩의 김기설 필적 등
- 28. 이효경 김 분신 당시 대책회의 상황실 근무 김 분신 직후의 조작시비 전민련 수첩사본 일부 소지 전민련 수첩의 김기설 필적 등
- 29. 김기설 친구 김기설의 필적 관계 등
- 30. 오니시 요시오 한국 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필적감정 수행 감정서에 관한 사항 (일본인)
- 31. 김현수 전민련 실무자 전민련 수첩 및 업무일지 관계
- 32. 원순용 전민련 실무자 전민련 수첩관계
- 33. 최재인 전민련 실무자 전민련 수첩관계
- 34. 김형민 전민련 실무자 김기설, 강기훈의 업무분장 및 서증 입증 등
- 35. 박동희 전 노동자신문 지국장 서증(명함) 입증
- 36. 김영주 KNCC. 목사 일본에 감정의뢰한 경위

(공판기록 380)

*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등 전부의 열람 및 등사 신청 (검사 신상규) <생략>

■자료 A-8

(공판기록 381~382)

* 증인소환장(윤석순, 홍성은) 우편송달보고서<생략>

(공판기록 383~384)

* 증인(김시중, 홍중희, 박찬수, 강효남, 정일부) 주소 신고서(변호인) <생략>

(공판기록 385~389)

* 증인소환장(김시중, 강효남, 정일부, 박찬수) 우편송달보고서 <생략>

洪成은 양 출두안해
 김기설 분신 후의 전민련 주변관계, 업무일지 내용 일부 작성 경위 등
 김 분신 당시 범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 김 분신 직후의 조작시비 전민련 수첩사본 일부 소지
 김 분신 당시 대책회의 상황실 근무 김 분신 직후의 조작시비 전민련 수첩사본 일부 소지
 김기설 친구 김기설의 필적 관계 등
 한국 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필적감정 수행 감정서에 관한 사항 (일본인)
 전민련 실무자 전민련 수첩 및 업무일지 관계
 전민련 실무자 전민련 수첩관계
 전민련 실무자 김기설, 강기훈의 업무분장 및 서증 입증 등
 전 노동자신문 지국장 서증(명함) 입증
 일본에 감정의뢰한 경위

洪成은 양 출두안해
 김기설 분신 후의 전민련 주변관계, 업무일지 내용 일부 작성 경위 등
 김 분신 당시 범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 김 분신 직후의 조작시비 전민련 수첩사본 일부 소지
 김 분신 당시 대책회의 상황실 근무 김 분신 직후의 조작시비 전민련 수첩사본 일부 소지
 김기설 친구 김기설의 필적 관계 등
 한국 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필적감정 수행 감정서에 관한 사항 (일본인)
 전민련 실무자 전민련 수첩 및 업무일지 관계
 전민련 실무자 전민련 수첩관계
 전민련 실무자 김기설, 강기훈의 업무분장 및 서증 입증 등
 전 노동자신문 지국장 서증(명함) 입증
 일본에 감정의뢰한 경위

자료 나-6-1 (공판기록 390~391)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 조서

제 6 회

사 건 91 고탐 1126 자살방조
91 고탐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판사 정 일 성
판사 이 영 대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피 고 인 강 기 훈

검 사 신상규 및 송명석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및 한기찬

증 인 김시중, 홍중희, 박찬수 및 강효남

증 인 홍성은 및 윤석순

증 인 정일부

기 일 1991. 11. 6. 10:00
장 소 제 417 호 법정
법정의 공개여부 공 개
고지된 다음 기일 1991. 11. 7. 14:00

출 석
각 출 석
각 출 석
출 석
각 불출석
출 석

재 판 장 전회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없다는 의견진술
재 판 장 출석한 증인 별지와 같이 신문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변호인)
재 판 장 변론 속행(불출석한 증인 홍성은, 윤석순 각 재소환)

1991. 11. 11.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자료 나-6-2 (공판기록 392~406)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6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탐 1126 자살방조
91 고탐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김 시 중
생 년 월 일 1969. 1. 21. 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학 생
주 거 경기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현대 전자공학과 4학년을 다니던 중
휴학하고 있는 상태이고 성남 테사랑청년회에 가입하
여, 창립당시에는 기획부장이었고, 현재는 이 모임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지요

답 : 예.
문 : 성남 테사랑청년회는 1989년 10월 3일 창립대
회를 가진 모임으로서,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적인 유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답 : 예.
문 : 성남 테사랑청년회의 전신은 서울 통학생들을
주축으로 하여 결성된 성남시 학우회연합회였고, 위
모임은 고 김기설씨가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던 성
남 민청련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증인
은 1988년 말경부터, 김기설씨와 알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씨는 민청련 사무실에 상근하였고, 증인
도 거의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며, 당시 김기설씨
는 한때 철학과를 중퇴한 동문 선배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증인과는 각별히 친하게 지냈지요

답 : 예.
문 : 성남 테사랑청년회는 1989년 10월 3일 경원대
학교 C동 2층 계단강의실을 빌려 창립총회를 가지기
로 하였고, 그 총회에 김기설, 정일부 등 성남민청련
간부들을 초대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강당에 있다가 김기설 등 일행이 도착
한다고 하여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김기설 일행을 맞
이하였지요

답 : 예.
문 : 당시 방명록은 계단을 나가는 입구쪽에 옮겨
놓은 책상위에 놓아두고 기재하게 하였지요

답 : 예.
문 : 이때 증인은 전현철, 정일부, 김기설 등이 스
프링노트로 대신한 방명록에 서명하는 것을 직접 보
았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성남 민청련에서는 한정덕이라고 기
재하였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성남 민청련에서는 한정덕이라는 이
름으로 활동하고 있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 한정덕 양쪽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으나 어느 쪽이 본명인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
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의 글씨를 자주 보아 왔기 때문
에 이 사건 유서에 나타난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라는
데에 대하여 하등의 의심을 품고 있지 않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증인과 이야기할 때에는 이야기하는
내용을 동시에 낙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는, 찢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그

의 버릇이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김기설이 정자체를 쓰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였고, 흘림체로 쓰는 글씨만을 자주 보았다고 하였지요

답: 예.

변호인추 증제1호(방명록)¹²⁰⁾ 제시

문: 이 서류상의 '자주, 민주, 통일의 가치를 들고 솟아라' 타사랑청년학우회여 민중해방의 함성으로' 라고 쓴 글씨가 김기설의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김기설의 유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자 사무실에 있는 김기설의 필적을 찾아 낸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또한 김기설이 대유공전 학보에 원고를 제출하여 원고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대유공전 학보 편집실에 찾아가, 혹시 원고가 남아 있는지 문의하여 보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학교 교지편집실에서 김기설에게 원고를 청탁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도 있지요

답: 예.

문: 대유공전 학보편집실에서는 처음에는 찾지를 못하다가, 김기설이 1990년 6월 7일 다른 이름으로 게재한 논고의 원고를 찾아 1991년 6월 20일 전달하여 주어 받아 왔었지요

답: 예.

문: 위 논고에는 김기설은 무슨 이름으로 게재되어 있었나요

답: 정확히는 모르나, 이영복이라고 게재되었을 것입니다.

문: 위 원고를 전달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답: 공예과 90학번 류종현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문: 증인에게 그 원고를 전하여 준 위 류종현은 지금은 군에 입대하였다고 하였지요

답: 예.

변호인추 증제 4호중의 1(대유학보 원고)¹²¹⁾ 제시

120) 총자료집 II책 120쪽 참조.

문: 이것이 증인이 받아 온 김기설의 원고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은 증인이 찾은 위 자료를 1991년 6월 하순경 명동성당에서 전민련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주었지요

답: 예.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변호인추 증제1호(방명록) 제시

문: 표지를 제외한 첫장, 둘째장이 뜯어져 있는데 누가 뜯었나요

답: 증인이 뜯었습니다.

문: 왜 뜯었나요

답: 1990년 8월경 사무실에 수사를 나온다고 해서 여기 적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감추려고 뜯었습니다.

문: 보관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 다른 서류와 함께 보관하였습니다.

문: 뜯어진 2장 외에 나머지 부분은 어디 보관하였나요

답: 사무실에 낙서판 노트들과 같이 보관하였습니다.

문: 어떻게 여기 다시 꽂혀 있나요

답: 1990년 말경 다시 꽂아 놓았습니다.

문: 전현철, 김병희 두 사람을 알고 있나요

답: 예.

문: 위 두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답: 전현철은 고교 은사이며 전교조 성남 지회장이었으며, 김병희는 증인과 같은 단체에 있는 후배입니다.

문: 위 전현철, 김병희 두 사람이 이 방명록 쓰던 때 그 자리에 참석하였지요

답: 예.

문: 위 전현철, 김병희의 진술에 의하면 위 노트의 2장을 찢은 것이 이 사건 이후라고 하였고, 증인은 1990년 8월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요

답: 증인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문: 전현철이 참석하여 측사한 사실이 있나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121) 총자료집 II책 794쪽 참조.

문: 전현철의 진술에 의하면 방명록은 스프링노트가 아니라 표지가 검정색이며 앨범식으로 되었고 안에는 백지였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요

답: 스프링노트가 맞습니다.

문: 여기 있는 15명의 서명의 다른 서명부분이 더 있었습니까

답: 이것이 전부입니다.

문: 모임 참석자는 몇명 정도였습니까

답: 40-50명이었습니다.

문: 전현철에 의하면 참석자 50-60명 모두 서명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답: 여기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문: 이 방명록을 전민련 관계자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제출하였나요

답: 1991년 6월 19일경 저녁 때 명동성당에서 였으며, 누구지는 모릅니다.

문: 그곳에 있을 때 본 전민련 관계자 중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답: 이도래씨는 기억납니다.

문: 위 노트를 받아간 전민련 관계자는 위 이도래씨는 아니지요

답: 예.

문: 노트를 받아간 사람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답: 남자입니다.

변호인추 증제4-1(대유학보 원고) 제시

문: 이 원고를 언제, 어디서, 전민련 누구에게 전달하였나요

답: 1990년 6월말경 명동성당 문화회관 무대 뒤에서 전달했는데 누구지는 모릅니다.

문: 김기설이 대유학보 원고를 제출한 것을 직접 목격한 때는 언제인가요

답: 1990년 4월경이었습니다.

문: 누가, 누구에게 원고청탁 하였나요

답: 책임자인 성명불상의 여자가 김기설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 증인이 김기설과 같이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김기설이 그곳에 간다고 하여 따라갔습니다.

문: 어떤 이름으로 원고를 제출하였나요

답: 나중에 확인하였더니 이영복인지 이용복으로

되었습니다.

문: 어떻게 확인하였나요

답: 원고료 받은 영수증에 이영복인지 이용복인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 학보에는 어떤 이름으로 되었는지 아는지요

답: 모릅니다.

문: 이 원고를 본 일이 있나요

답: 그것을 받아서 전민련에 전달한 것입니다.

문: 이와같이 오려진 부분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요

답: 교정 보면서 오려진 부분으로 보이며, 다른 오려진 부분도 더 있었습니다.

문: 이 원고가 김기설이 쓰거나 김기설이 제출한 것을 보지 못하였나요

답: 예.

문: 방명록과 원고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와 같은 것인가요

답: 방명록은 김기설의 것이나, 원고 글씨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문: 이 두 글씨가 유서 글씨와 같다고 생각하나요

답: 예.

문: 한겨레신문이 위 방명록이 유서와 같은지 필적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결과 결론은 이동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위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예.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방명록의 형태에 관하여 전현철씨와 증인의 진술이 다르다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답: 예.

문: 방명록을 전민련 관계자에게 제출한 것이 1990년 6월 19일이라고 진술했는데, 명동성당 천막 앞에서였나요

답: 예.

문: 위 방명록을 제출할 때 김병희씨와 같이 갔나요

답: 예.

문: 위 김병희 진술에 의하면 그때가 5월 20일 이라고 했는데, 그 날짜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답: 다시 생각해 보니 달수는 5월이 맞고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증인이 기자회견하기 전날이었습니다.

문: 위 방명록에 서명한 날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위 사진이 지금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그 사진에 방명록이 나타났는가요

답: 예.

문: 대유공전의 류종현이라는 학생은 왜 김기설의 것이라고 증인에게 원고를 주었나요

답: 돈 받은 확인원에 이영복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더니 이 사람이 김기설이라고 하면서 건네주었습니다.

문: 이영복과 김기설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위 류종현이 어떻게 알았는가요

답: 어떻게 알았는지 증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위 원고를 받기 전에 위 류종현을 만난 적이 없지요

답: 예.

재판장

증인에게

문: 김기설이 직접 변호인 증제1호(방명록)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고, 같은 제4-1호증(대유학보 원고)는 김기설이 쓰는 것을 본 적은 없으나 류종현이 김기설의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창립총회때 접수를 보았나요

답: 접수는 보지 않았습니다.

문: 접수를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김기설이 서명한 것을 알 수 있는가요

답: 증인이 기획부장으로 행사장을 왔다갔다 하여 몇 안되는 외부 손님의 한 사람인 김기설이 서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 일반적으로 방명록이라 함은 두터운 표지에 안에는 백지로 되어 있는 것이 상례인데, 그 당시의 방명록은 이 노트에 한 것이 맞지요

답: 예.

문: 위 방명록을 누가 가지고 있다가 제출한 것이

가요

답: 사무실에 있던 것을 증인이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문: 수사한다고 해서 이름이 노출이 될까봐 찢었다고 진술했는데 어디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붙였나요

답: 회원 명부 등과 같이 김규영이라는 회원집에 보관하였습니다.

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불태우거나 기타 방법으로 없애는 것이 통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다시 붙일 정도로 중요한 서류인가요

답: 모든 서류는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문: 류종현이라는 학생이 특히 증인을 주목하여 대유학보 원고를 건네준 이유가 있나요

답: 증인이 대유 총학생회로 원고가 있다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총학생회에서 위 류종현을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문: 원고의 앞장을 보면 뜯어져 나간 부분이 있는데 뜯어져 있는 채 받았나요

답: 예, 교정볼 때 보통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학보에는 누구 이름으로 게재되었는지 아는지요

답: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창립총회 때 외부 손님은 몇명이나 되었나요

답: 외부 손님은 3명 정도 되고 선배 몇명이 왔으며 나머지는 회원들이었습니다.

문: 서명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답: 외부 손님과 일부회원만 하였습니다.

1991. 11. 6.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407)

자료 나 6-3 (공판기록 408~417)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6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향 1126 자살방조
91 고향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홍 중 회
생 년 월 일 1957. 11. 12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원주 민주시민회 사무국장
주 거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증인은 원주지역의 민주화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원주민주시민회의 사무국장인가요

답: 예.

문: 회원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답: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을 아나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을 전에 만나 본적이 없나요

답: 명동성당에서 먼 받치에서 한번 본적밖에 없습니다.

문: 증인은 분신자살한 김기설을 알고 있나요

답: 예.

문: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나요

답: 1991. 3. 초순 전민련 사무실에 가서 전민련 새로 가입된 사람이라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증인은 1991. 3.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주

지회 사무실 개소식에 김기설과 함께 참석한 일이 있나요

답: 예.

문: 증인이 그 무렵 김기설을 만나게 된 경위는 속초에 소재하는 동우전문대학교에서 학생 한 사람이 분신자살을 기도하여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증인이 당시 전민련에 진상조사를 요청해서 1991. 3. 23. 오후 2시경 김기설이 원주에 내려오셔서 만나게 된 것인가요

답: 예.

문: 원주에 내려온 김기설은 기독병원에 들러 병실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황을 물어본 후 1991. 3. 22. 오후 9시경 증인 등과 함께 속초에 내려가 동우전문대 학생들 및 관할 경찰서 등에 가서 분신 경위 등을 조사하였나요

답: 예.

문: 그리고 1991. 3. 23. 오전 5시경 다시 증인과 김기설의 2명이 원주로 돌아와 기독병원 부근에서 같이 아침식사를 한 후 증인은 집을 들어서 원주민주시민회 사무실로 가고 김기설은 기독병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나요

답: 예.

문: 그리고 증인이 잠시 외출했다가 점심시간 무렵 원주민주시민회 사무실로 돌아오니 김기설이 사무실과 있었나요

답: 예.

문: 1991. 3. 23. 당일은 마침 전교조 원주지회 사무실 개소식이 있는 날이라 증인은 김기설에게 권유하여 전교조 원주지회 사무실로 같이 갔나요

답: 예.

문: 3. 23이 개소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답: 초청장을 받았습니.

문: 증인과 김기설은 전교조 원주지회 사무실에 도착하여 개소식을 축하하는 뜻으로 같이 방명록에 서명한 일이 있나요

답: 예.

문: 당시 방명록이 어디에 있었나요

답: 입구 왼쪽에 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방명록의 모양 및 방명록에 서명할 당

시 사용된 필기구를 기억하나요

답 : 표지는 검정색이고 가로가 긴 것이었으며 입구에 청색 싸인펜과 검정색 싸인펜 두개가 있었고 중인이 청색 싸인펜으로 서명하고 김기설이 자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민련에서 왔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중인이 권유하여 김기설도 청색 싸인펜으로 서명하였습니다.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 3호(방명록)122) 제시

문 : 이 방명록에서 중인이 서명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답 : 다섯째장의 '참교육의 ... 원주 민주시민회' 부분입니다.

문 : 위 방명록에서 김기설이 서명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답 : 첫장의 '이땅의 ... 김기설' 부분입니다.

문 : 평소 김기설의 필적을 아는지요

답 : 모릅니다.

문 : 중인은 당시 사무실 개소식을 주관한 전교조 원주지회장의 이름 및 직업을 알고 있나요

답 : 김인희라는 해직교사입니다.

문 : 중인과 김기설은 방명록에 서명을 마치고 위 사무실에 계속 있었나요

답 : 예.

문 : 당시 어떤 행사가 있었으며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있나요

답 : 40명 정도 참석하여 돼지머리를 놓고 제를 지냈으며 김기설과 중인이 절을 하였습니다.

문 : 중인과 김기설은 위와 같이 전교조 원주지회 개소식에 참석하였다가 같이 돌아왔나요

답 : 예, 함께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문 : 이후 당일 중인과 김기설의 행적이 어떻게 되나요

답 : 사무실에 갔다가 김기설이 차비가 없으니 1만 원을 달라고 해서 주고, 중인은 나갔습니다.

문 : 그후 몇번 만났나요

답 : 2번 정도 만났습니다.

122) 자료집 II책 쪽 참조.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1991년 3월 22일 처음 만났나요

답 : 그해 3월 초, 두번 만났습니다.

문 : 개소식 전 김기설의 필적이나 김기설이 글씨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방명록 서명은 중인이 먼저 쓰고 김기설이 썼다고 했는데 그 다음은 누가 썼는지요

답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 방명록을 그날 보고 오늘 처음 보았나요

답 : 예.

변호인측 증3호(방명록) 제시

문 : 변호인이 위 방명록을 제시하면서 중인 것을 찾으라고 하여 중인 것을 찾고 그 다음에 김기설을 찾으라고 하자 중인 다음에 썼다는 김기설의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 넘겨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방명록을 넘기면서 처음에 김기설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 : 김기설의 것은 본래 서명한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위 방명록의 제출경위나 김기설 서명부분이 헛어진 이유를 알고 있나요

답 : 모르겠습니다.

문 : 김호영씨를 아는지요

답 : 잘 알고 있습니다.

문 : 위 김호영씨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아나요

답 : 중인의 강원 민통련 총무부장으로 있을 때 원주시민학교를 개설하였는데 김호영이 그 당시 학생으로 입교해서 계속 알게 되었습니다.

문 : 광대순씨를 알고 있나요

답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 : 광대순은 원주 전교조에서 일하는 분인가요

답 : 예.

문 : 1991년 3월 23일 원주지회 사무소 개소식 때 광대순이 김기설 등 손님들에게 방명록을 써달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입구의 방명록을 책임졌습니다.

문 : 광대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김기설 다음에 김호영이 서명하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 : 김호영이 언제 서명했는지는 모릅니다.

문 : 왜 모르나요

답 : 앞에 사람이 많고 김기설하고만 얘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문 : 광대순이 손님들을 접대하였나요

답 : 예.

문 : 김호영씨의 서명을 찾을 수 있나요

답 : 예.

변호인측 증제3호(방명록) 제시.

문 : 이 방명록 중 어느 부분이 김호영의 서명인가요

답 : 쓴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열번째의 것이 김호영의 것 같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김기설의 것이 왜 뜯어졌는지 아는지요

답 : 모릅니다.

문 : 김기설의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평소 김기설의 필체를 알고 있어서 인가요, 아니면 김기설이라는 이름을 보고서 인가요

답 : 그 당시 쓴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문 : 그 내용을 아는지요

답 : 기억나지 않으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라고 썼을 것입니다.

1991. 11. 7.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418)

☐자료 나-6-4 (공판기록 419~426)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6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평합 1126 자살방조
91 고평합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박 찬 수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직 업 한겨레신문 기자
주 거 서울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제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증인은 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기자시지요

답 : 예.

문 : 강경대군 사건이 터졌을 때 증인은 동대문경
찰서에 출입하다가 강기훈 피고인을 포함하여 대책회
의 사람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후 명동
성당에 나가 그 농성상황을 취재한 것으로 아는데 그
렇습니까.

답 : 예.

변호인측 증제3호(방명록)123) 제시

문 : 이 방명록을 아시겠습니까.

답 : 예.

문 : 이 방명록을 어떤 경위로 증인이 입수하게 되
었습니다.

답 : 5월 23일경 당시 한겨레신문 시경팀 기자이던
이상현 선배로부터 "원주에서 김영애씨가 김기설이

123) 총자료집 II책 793쪽 참조.

서명한 방명록을 가져오니 그것을 받아서 필적감정을
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오후 6시 서소문 상호불상 다
방에서 김영애를 만나 건네받았습니다.

위 방명록중 첫장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의 최선
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
국부장 김기설"이라고 기재된 부분 제시

문 : 이것이 김기설이 쓴 것입니까.

답 : 김영애로부터 김기설이 쓴 것이라고 하여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 김기설이 어떤 경위로 이 방명록에 이러한 글
을 썼다고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답 : 원주 전교조 창립대회에 참석한 김기설이 썼
다고 들었습니다.

문 : 맨 밑부분에 "방명록 원본"이라는 연필 글씨
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쓴 것입니까.

답 : 증인이 썼습니다.

문 : "민족"이란 글씨와 연합의 "합"자에 동그라미
표시는 누가 하였습니까.

답 : 아마 필적감정시 감정인이 했을 것입니다.

문 : 당시 한겨레신문에서 감정의뢰를 하였다는 보
도가 있었는데 이 방명록의 필적도 감정의뢰하였습
니까.

답 : 예.

문 : 방명록 전부를 감정인에게 보냈습니까.

답 : 김기설의 쓴 부분만 떼어내어 보냈습니다.

문 : 감정의뢰를 한 것은 언제이며 감정결과는 어
떻게 나왔습니까.

답 : 그 당일인 5월 23일 4시경이며 필체의 유사성
과 상이성이 공존해서 이동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 : 이 방명록 은 그동안 증인이 보관하고 있었습
니까.

답 : 예, 회사에 보관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이 썼다는 부분이 몇장짜에 있었나요.

답 : 중간정도로 기억합니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방명록 받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답 : 서소문 상호불상 지하다방이었습니다.

문 : 김영애씨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답 : 서소문 상호불상 다방에서 받은 것이 맞습니
다.

문 : 김영애는 원주 전교조 직원인가요.

답 :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전교조 직원이 아닌데 건네준 경위는 어떤가요.

답 : 당시는 직원인줄 알았으나 직원한테 부탁받아
전달한 것으로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 : 방명록 중 김기설 부분을 뜯은 것 외에 순서를
바꾸거나 풀었다 묶었다든지 하지 않은 채 원본 그대
로 인가요.

답 : 예. 원본 그대로입니다.

문 : 광대순을 아는가요.

답 :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문 : 광대순의 진술에 의하면 홍중희, 김기설, 김호
영 순으로 서명을 했는데 어떤가요.

답 : 김기설의 앞뒤에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문 : 감정의뢰는 한겨레신문이 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개인적으로 했나요.

답 : 저희 신문사에서 했습니다.

문 : 감정결과 방명록과 유사와는 특정비율 상반으
로 이동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했나요.

답 : 예.

문 : 감정결과 회보서는 어디 있나요.

답 : 신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변호인측 증 제3호(방명록) 증 첫장 제시

문 : 이 부분이 김기설의 것인 줄은 어떻게 아나요.

답 : 증인이 연필로 쓴 걸 보니 틀림없습니다.

문 : 김영애에게 받아 바로 감정을 의뢰하였나요.

답 : 받자마자 바로 의뢰하였습니다.

문 : 감정의뢰한 곳은 어디인가요.

답 : 서소문 소재 중앙인영 필적감정원입니다.

문 : 방명록을 받아 일부 감정의뢰한 이외 외부에
나간 것이 있나요.

답 : 그런 적은 없고 계속 시경첩을 맡고 있는 기
자의 책상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필적감정을 의뢰할 때 방명록과 유사사본만
의뢰하였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함께 의뢰하였나요.

답 : 방명록과 유사사본의 강기훈이 민중당 성동지
구당에 보냈다는 보고서 원본 그리고 강기훈이 옥중
에서 썼다는 편지 사본을 함께 보내 의뢰하였습니다.

문 : 위 네가지 전부에 대해 이동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답 : 예.

문 : 위 필적감정 의뢰할 때 외에 또 감정의뢰한
것이 있나요.

답 : 그 며칠전 유사사본과 2개의 서류를 감정의뢰
하였습니다.

문 : 감정결과는 어땠나요.

답 :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그 감정결과도 한겨레신문사에 있나요.

답 : 예.

1991. 11. 6.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427)

☐자료 나-65 (공판기록 428~436)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6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향 1126 자살방조
91 고향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강 효 남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경기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1990년 1월 13일 수원민주화운동 청년
연합의 위원장인가요

답 : 예.

문 : 창립당시 증인의 직책은 무엇이었나요

답 : 회원이었습니다.

문 : 증인은 언제부터 위 단체의 위원장직을 맡아
하고 있나요

답 : 1990년 12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피고인을 아나요

답 : 명동성당에서 증인만 피고인을 한 번 본적이
고 정식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문 : 증인은 본신자살한 김기설을 아나요

답 : 예.

문 : 김기설을 어떻게 아나요

답 : 창립총회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문 : 1990년 1월 13일 수원민주화운동 연합창립대
회가 수원에 소재하는 아주대학교 인문사회관 강당에
서 열렸지요

답 : 예.

문 : 당시 창립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
역의 민주화운동단체 관계 사람들이 참석하였지요

답 : 예.

문 : 참석자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였나요

답 : 100여명 정도였습니다.

문 : 수원민청련측은 방명록을 마련하여 참석자들
로부터 서명을 받았지요

답 : 예.

문 : 당시 김기설도 참석하였나요

답 : 예.

문 : 김기설이 어떤 자격으로 당일 몇시쯤 참석하
였나요

답 : 성남민청련 대표자격으로 오후 2시에서 2시반
경에 참석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과 통성명했나요

답 : 통성명했으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증인은 당시 김기설과 대화를 나눈 일이 있나
요, 어떤 내용의 대화였나요

답 : 어디서 왔느냐고 하자 성남민청련 대표로 왔
다고 하여 서명하시라고 하여 서명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 또한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방
명록에 서명하였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당시 김기설이 방명록에 서명하는 것
을 목격하였나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10호(방명록)124 제시

문 : 이것이 당시의 방명록인가요

답 : 예.

문 : 이 방명록중 김기설이 서명한 부분이 어느 것
인가요

답 : 두번째장 앞면입니다.

문 : 증인은 수원민청련 창립대회가 참석한 김기설
이 언제 돌아갔는지 아나요

답 : 예.

124) 자료집 II책 823쪽 참조.

답 : 6시에서 6시반경에 돌아갔습니다.

문 : 당일 창립대회는 대략 몇시경에 시작해서 몇
시경에 끝났나요

답 : 3시경에 시작하여 6시반경에 끝났습니다.

문 : 위 수원민청련 창립대회 당일 수원민청련 회
원인 구본적이 참석자들의 사진을 찍은 일이 있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거서류 증제21호 제시

문 : 이 사진 2매가 당시 찍은 것들인가요

답 : 예.

문 : 이 사진들 속의 장소가 아주대 인문사회관 강
당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당시 수원민청련 창립대회
에 참석한 사람들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 사진속의 사람들 중에서 김기설을
가려낼 수 있나요

답 : 예, 위 사진 중 앞줄에서 세번째 왼쪽 첫좌석
에, 아래 사진중 앞줄에서 두번째 왼쪽 첫좌석에 앉은
사람이 김기설입니다.

검사 송명석

증인에게

문 : 수원 민청련 창립 당시 어떤 직책을 맡았나요

답 : 특별한 직책없이 다른 회원들과 창립준비를
하였습니다.

문 : 당시 접수를 보았나요

답 : 처음에서 중간 때까지 접수를 하였습니다.

문 : 창립대회 당시 100여명이 왔는데, 성남민청
련에서 김기설 외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는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이 방명록을 쓸 때 보았나요

답 : 예, 당시에는 증인이 접수를 보고 있었습니
다.

문 : 창립대회를 할 때 방명록을 준비하였다면 통상
의 예대로 당시 방명록에 쓸 필기구도 준비했는가요

답 : 가늘게 나오는 싸인펜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검사께서 가지고 있는 플러스펜 비슷한 것입니다.

변호인측 증제 10호(방명록) 제시

문 : 이 방명록을 구입경위는 어떤가요

답 : 증인이 그 전날 문방구에서 사서 보관하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문 : 방명록중 앞부분은 하얗고 뒷부분은 약간 검
은데, 증인이 보기에는 이 방명록중이 전체가 동일한
재질로 보이나요

답 : 예, 동일한 지질로 보입니다.

문 : 앞부분과 뒷부분의 색깔이 차이가 있지 않은
가요

답 : 검사께서 색깔이 달라 보인다면 제 생각으로
는 아무래도 앞 부분은 서명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
으로 생각합니다.

문 : 그렇다면 앞부분이 검어야 하는데, 반대로 사
용된 앞 부분이 하얗고 사용되지 않은 뒷부분이 검지
않은가요

답 : 저는 같은 색깔로 보입니다.

문 : 방명록이 다섯 묶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
로 장수가 다르지요

답 : 저는 같이 보입니다.

문 : 그러면 세어봅시다. 첫번째 구획 부분의 장수
는 26장, 두번째 구획 부분의 장수는 5장, 세번째 구
획부분의 장수는 6장, 네번째 구획부분의 장수는 8장,
다섯번째 구획부분의 장수는 9장입니다. 그렇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가는 싸인펜을 필기구로 준비했다는데,
이 서명된 부분중 뒷부분은 가는 싸인펜이 아니지요

답 : 처음에는 가는 싸인펜을 준비했다가 나중에
사람이 많이 와서 매직펜보다는 가는 싸인펜도 준비
하였습니다.

문 : 맨 앞의 파란 부분은 언제 찢어졌나요

답 : 서명할 때 찢은 것 같습니다.

문 : 첫번째 구획 부분은 다양한 필기구(볼펜 내지
플러스펜, 매직펜, 사인펜 등)로 쓰여 있는데, 나머지
구획 부분은 한 가지 필기구로 쓰여 있는 것이 맞지요

답 : 예.

문 : 방명록을 그 전날 사다 놓은 것이 맞나요

답 : 예.

문 : 첫 구획 부분과 나머지 구획 부분의 종이 길
이가 같은가요, 틀린가요

답 :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 이 방명록의 첫번째 묶음은 옆을 보면 튀어나와 있고 그 뒷 묶음은 좀 들어간 상태로 편철되어 있지요.

답 : 예.

문 : 문방구에서 전날 사온 방명록이라면 공산품이라 지질, 제본 상태 등이 균일해야 하는 것인데 왜 다른가요 문방구에서 사온 방명록 그대로 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 더 끼워 놓은 것인가요.

답 : 증인이 더 보태거나 다시 제본한 적은 없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언제 어떤 경위로 명동성당에 갔나요.

답 : 5월 18일경 유서대필 사건 기사를 읽고 5월 20일경 송의여전 기자회견한 것을 알고 5월 22일에 찾아갔습니다.

1991. 11. 7.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437)

자료 나-6-6 (공판기록 438~446)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

(제 6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 고향 1126 자살방조
91 고향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증 인 정 일 부
생 년 월 일 1960. 9. 26 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자유기고가
주 거 경기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제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고 김기설씨와 알게 되었는가요.

답 : 88년도경 성남민청련 창립할 때 신입회원으로 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 증인은 성남민청련 회장직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 재임기간은 어떠한가요.

답 : 89년도 9월 2일부터 90년 3월 3일까지입니다.

변호인측 증제7호(성남 민청련 상황일지 11매)¹²⁵⁾ 각 제시

문 : 이 상황일지는 성남 민청련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나요.

답 : 예.

문 : 그 상황일지증 2매(1989년 9월 23, 9월 24일

125) 총자료집 II책 800쪽 참조.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지에는 위원장 또는 확인란에 증인이 '정일부'라고 서명하였나요.

답 : 예.

문 : 이 상황일지는 누가 기재하였나요.

답 : 기재는 상근자들이 하는데, 주로 증인과 김기설이 많이 기재하고 그밖에 너댓명의 직원들이 같이 하였습니다.

문 : 상황일지 첫머리의 "전국 및 지역동향"란에 큼직하게 써어진 글씨와 그 이하 같은란에 그와 똑같은 필치로 써어진 글자는 김기설에 의하여 써어진 것인가요.

답 : 예.

1989년 12월 5일자²⁶⁾ 상황일지 제시

문 : 이 날짜의 일지중 역시 "상근자들의"란에 '한겨레신문 간지작업'이라고 써어진 부분은 누가 기재한 것인가요.

답 :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1990년 1월 12일자²⁷⁾ 상황일지 제시

문 : 이 날짜의 일지중 역시 "상근자들의"란에 '인하병원노보관계 방문'이라고 써어진 부분은 누가 기재한 것인가요.

답 : 김기설씨 글씨입니다.

1990년 1월 15일자²⁸⁾ 상황일지 제시

문 : 이 날짜의 일지중 '지역동향'란에 '터사랑 여명제 개막식'이라고 써어진 부분은 누가 기재한 것인가요.

답 : 김기설씨 글씨입니다.

1989년 10월 3일자²⁹⁾ 상황일지 제시

문 : 이 날짜의 상황일지 중 "전국 및 지역동향"란에 '터사랑 청년학우회 창립총회(오후 2시 경원대)'라고 써어 있는데, 증인은 그날 김기설, 전현철과 함께 위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자기 방명록에 서명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변호인측 증제1호증(방명록)¹³⁰⁾ 제시

126) 총자료집 II책 808쪽 참조.

127) 총자료집 II책 809쪽 참조.

128) 총자료집 II책 810쪽 참조.

129) 총자료집 II책 807쪽 참조.

130) 총자료집 II책 791쪽 참조.

문 : 이 노트가 그 당시 창립총회장소인 계단식 강당 입구에 내놓은 책상위에 놓여진 방명록이 맞는지요

답 : 예.

문 : 그리고 증인 다음으로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들고 솟아라' 터사랑청년학우회여 민중해방의 함성으로(성남 민청련 교선부장 한정덕)'이라고 김기설이 기재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성남지역에서 주로 한정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나요

답 : 예.

문 : 김기설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였나요

답 : 예, 두가지를 번갈아 사용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의 필체를 평소에 잘 알고 있었나요

답 : 글씨가 특이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문 : 성남민청련의 교육선전부장이란 직책은 평소에 글씨를 많이 써야 하는가요

답 : 그렇다기 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글씨를 많이 남겼습니다.

문 : 김기설이 대유공전에 논문을 기재한 사실이 아나요

답 : 예.

변호인측 증제1호(방명록) 제시

문 : 방명록 첫 페이지의 "정일부, 민주화 ... 축하드립니다."라는 것을 증인이 쓴 것이 맞나요

답 : 예.

검사 신상규

변호인측 증제7호(상황일지) 제시

문 : 이 상황일지가 어디에 보관되었다가 언제 누구 손을 통해 제출하였나요

답 : 성남민청련 회원들이 보관한 것은 알고 있으나 전부 작성된 것중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문 : 일지작성을 띄엄띄엄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부

작성된 것 중 일부 발췌한 것인가요

답 : 매일 쓰는 것이 원칙이며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백지라도 있을 텐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되어 제출된 것 같습니다.

문 : 첫 페이지 큰 글씨는 김기설이 썼다고 했는데 부서, 분과란은 누가 쓴 것인가요

답 : 증인이 쓴 것입니다.

문 : 9월 23일, 9월 24일, 9월 25일 일지131)중 전국 및 지역동향란은 누가 썼나요

답 : 김기설이 썼습니다.

문 : 9월 25일 일지중 부서중 큰 글씨는 누가 썼나요

답 : 김기설이 썼습니다.

문 : 9월 25일 일지중 부서 및 분과란은 누가 썼나요

답 : 증인이 썼습니다.

문 : 9월 26일 일지132)중 전국 및 지역동향란은 김기설이 부서란, 비교란은 증인이 썼나요

답 : 예.

문 : 9월 27일 일지133)중 전국 및 지역동향란은 김기설이 쓰고, 부서란은 증인글씨인가요

답 : 예, 그리고 비교란중 「대의원총회 오후 8시」까지는 김기설 글씨입니다.

문 : 9월 30일 일지134)중 전국 및 지역동향란은 김기설 글씨고, 부서란은 증인 글씨인가요

답 : 예

문 : 10월 3일 일지도 마찬가지인가요

답 : 예.

문 : 12월 5일 일지135)중 「한겨레신문 간지작업」은 기설이 글씨가 아닌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12월 5일 일지중 나머지 글씨중 김기설 글씨가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1월 12일 일지136)중 「인하병원, 노보관계방문」은 김기설의 것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떤가요

- 131) 총자료집 II책 803쪽 참조.
- 132) 총자료집 II책 804쪽 참조.
- 133) 총자료집 II책 805쪽 참조.
- 134) 총자료집 II책 806쪽 참조.
- 135) 총자료집 II책 808쪽 참조.
- 136) 총자료집 II책 809쪽 참조.

답 : 증인 글씨입니다.

문 : 1월 15일 일지137)중 「"터사랑" 여명제 개막식」은 김기설의 글씨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떤가요

답 : 증인이 쓴 것입니다.

문 : 김기설의 글씨라고 증인이 말한 것이 또박또박 쓰여 있는데, 흘림체를 본 적이 있나요

답 : 흘림체는 방명록에 있습니다.

문 : 증인은 상황일지에서 쓰여진 대로 또박또박 쓰여진 것을 많이 보았나요

답 : 예.

문 : 김기설의 정서체와 흘림체와 차이가 있나요

답 : 별 차이 없습니다.

문 : 김기설의 특이한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답 : 말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상황일지에 있는 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문 : 정서체와 흘림체가 같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 : 정서체와 흘림체의 차이가 없다기 보다는 예를 들면 방명록의 글씨나 상황일지의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로 보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변호인측 증제1호중(방명록) 제시

문 : 한정덕이라고 쓴 것이 김기설의 글씨가 틀림 없나요

답 : 예.

문 : 김기설이 상황일지에 또박또박 쓴 것과 방명록상의 흘림체와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일용 김기설의 것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답 : 예, 판정할 수 있습니다.

1991. 11. 6.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사 노 원 옥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447)

137) 총자료집 II책 810쪽 참조.